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고 제2025-128호

2026학년도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공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2026학년도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3. 31.

서울특별시교육감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

서울자랑 **맞춤!**
서울교육 **바람!**

2026학년도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2025. 3.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지원 과]

C·O·N·T·E·N·T·S

I 개요

- 1. 목 적 1
- 2. 기본 방침 1
- 3. 지원 자격 3

II 전기고등학교 전형

- 1. 과학계열의 특수목적고등학교 4
- 2. 예술계열의 특수목적고등학교 4
- 3. 체육계열의 특수목적고등학교 5
- 4.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마이스터고등학교) 5
- 5. 특성화고등학교 6
- 6. 일반고등학교 중 예·체능계고등학교 6
- 7. 관악예술과 6

III 후기고등학교 전형

- 1. 교육감 선발 후기고등학교 7
- 2. 예술·체육·과학중점학급 운영학교 8
- 3. 학교장 선발 후기고등학교 9
 - 가. 특수목적고등학교(외국어·국제계열) 9
 - 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9
 - 다. 학교장 선발 일반고등학교 10

IV 특별학생 및 추가전형

- 1. 고입 특례대상자 11
- 2. 특수교육대상자 12



3. 보훈자 자녀	13
4. 체육특기자	13
5. 외국인 유학생	14
6. 지체장애인 등	14
7. 특이 배정자	15
8. 입학전 배정	16
9. 고등학교 입학 추가전형	17

V 행정 사항

1. 이중지원의 금지	18
2. 거주사실 조사	19
3. 중학교 성적 관리	19
4. 연수 및 홍보	20
5. (학교장)진학업무 유의사항	20
6. (교육감)진학업무 지도·감독	20
[붙임-1] 2026학년도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입학전형 주요 일정	21
[붙임-2]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학교군	22
[붙임-3] 고입전형을 위한 중학교 성적 산출 지침	23
[붙임-4] 과학고 자기주도학습전형 매뉴얼	31
[붙임-5] 외국어고·국제고 자기주도학습전형 매뉴얼	41
[붙임-6] 서울체육고 입학전형 매뉴얼	46
[붙임-7] 산업수요맞춤형고(마이스터고) 입학전형 매뉴얼	50
[붙임-8] 특성화고 입학전형 매뉴얼	52
[붙임-9] 자율형 사립고 자기주도학습전형 매뉴얼	54
[붙임-10] 예술·체육중점학급 운영학교 자기주도학습전형 매뉴얼	59
[붙임-11] 고등학교 신입학 특례대상자 자격요건 개선(안) 사전 예고 ...	63



2026학년도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개요



1. 목적

- 가. 중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 실현 및 사교육 억제
- 나. 고등학교 입학전형의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
- 다. 학교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고입전형으로 모두가 행복한 혁신미래교육 실현

2. 기본 방침

- 가. 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제92조
- 나. 학교별 전·후기 전형 구분

1) 전기: 영재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과학·예술·체육계열,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 중 예·체능계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에 설치한 학과 중 교육감이 정하는 학과

2) 후기: 교육감 선발 후기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외국어·국제계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학교장 선발 일반고등학교

다. 전기고등학교 입학전형

- 1) 영재학교(서울과학고등학교)는 「영재교육 진흥법」이 정하는 방법으로 영재교육 대상자를 선정한다.
- 2) 전기고등학교(영재학교 제외)는 입학전형 일시, 원서접수 및 전형방법 등 입학전형의 실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학교별로 학생을 선발한다.



- 3) 전기고등학교의 신입생으로 선발된 자는 후기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없다.
 - 가) 미등록 결원 충원이나 추가모집에서 선발된 전기고등학교 추가합격자는 후기고등학교 입학원서 접수 개시일 이전에 입학 신고를 마쳐야 한다.
 - 나) 전기고등학교 추가모집 이후 미등록자 등으로 인한 결원은 신학년도 새 학기 시작 후, “전·편입학 또는 수시 추가 모집”으로 충원한다. 단, 후기고등학교 불합격자 또는 미지원자는 신학년도 전이라도 전기고등학교에서 수시로 충원할 수 있다.
- 4) 「자기주도학습전형」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는 학교는 “고등학교 입학전형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2027학년도 입학전형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후기고등학교 입학전형

- 1) 교육감 선발 후기고등학교(일반고등학교, 과학중점학급)는 중학교의 학교생활 기록부 기록에 의하여 교육감이 전체 정원만큼 학생을 선발한 후 전산 추첨하여 각 고등학교에 배정한다.
- 2) 학교장 선발 후기고등학교는 입학전형 일시, 원서접수 및 전형방법 등 입학전형의 실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학교별로 학생을 선발한다.
- 3) 「자기주도학습전형」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는 학교는 “고등학교 입학전형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2027학년도 입학전형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마. 입학전형 기본계획 공고

- 1) 입학전형 기본계획 공고 이후에 고등학교의 구분이 변경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입학전형 실시기일 3개월 전까지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2) 입학전형 실시권자가 입학전형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입학전형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그 실시기일 3개월 전까지 입학전형 일시, 원서접수 및 전형방법 등 입학전형의 실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3) 입학전형 실시권자는 2026학년도에 개교 예정인 학교의 경우 전형 실시일 30일 전까지 입학 전형 실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4) 천재지변, 감염병 유행 등에 따른 위기 상황 발생 시 교육부 지침 등에 따라 입학전형의 탄력적 운영 및 전형방법의 변경이 가능하다.
 - 학교장 선발 고등학교도 교육부 지침 등이 있는 경우 교육청과 협의하여 입학전형 일시 및 전형방법 등에 대해 조정할 수 있다.



3. 지원 자격

- 가. 서울특별시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
- 나. 중학교 졸업자로서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
- 다.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로서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
- 라. 다른 시·도 소재 특성화중학교 및 전국단위 모집 자율학교로 지정된 중학교 졸업예정자 중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
- 마. 예외
 - 학교별 전형요강에 의해 모집지역을 정하는 고등학교의 경우는 출신중학교 소재지 및 거주지의 제한을 받지 않음

※ 위 '나~라'항의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라 함은 원서 접수일 현재 '전 가족이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주민등록 상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는 자'를 뜻한다.
* 「입학전 배정」 및 「추가전형」도 동일함

[참고] 학교 유형별 전·후기 구분 현황

구 분			학교수	학 교 명	
전기 (83교)	학교장 선발고	영재학교	1	서울과학고등학교	
		특수 목적고	과학계열	2	세종과학고등학교, 한성과학고등학교
			예술계열	6	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덕원예술고등학교,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서울예술고등학교, 선화예술고등학교
			체육계열	1	서울체육고등학교
			산업수요맞춤형고 (마이스터고)	5	미림마이스터고등학교, 서울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 서울로봇고등학교, 서울반도체고등학교, 수도권전기공업고등학교
		특성화고	67	경기기계공업고등학교 등 67교	
		일반고 중 예·체능계고	1	서울미술고등학교	
		일반고에 설치한 학과 중 교육감이 정하는 학과(관악예술과)	(1)	염광고등학교	
후기 (235교)	교육감 선발고	일반고	210	가락고등학교 등 210교	
		과학중점학급	(22)	강일고등학교 등 22교	
	학교장 선발고	특수 목적고	외국어·국제계열	6	대원외국어고등학교, 대일외국어고등학교, 명덕외국어고등학교, 서울외국어고등학교,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 한영외국어고등학교
				1	서울국제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	16	경희고등학교 등 16교	
		예술·체육중점학급	(4)	대원여자고등학교, 영신여자고등학교, 송곡여자고등학교, 송곡고등학교	
		일반고	2	한광고등학교, 한국삼육고등학교	

* 관악예술과 및 예술·체육·과학중점학급 운영학교 수는 후기고 학교 수에 포함



II

전기고등학교 전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특수목적고등학교)제4항에 따라 대상학교 변동 가능

1. 과학계열의 특수목적고등학교(2교)

가. 지원 방법

- 1) 모집단위: 서울특별시
- 2) 내용: 소속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해당 고등학교에 개별 지원

나. 선발(전형) 방법

- 1) 선발기준: 입학전형위원회에 의한 「자기주도학습전형」으로 선발
- 2) 주요내용
 - 가) 중학교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입학전형 금지
 - 나) 교과지식만을 묻는 변형된 형태의 필기고사 금지
- 3) 특수교육대상자는 정원 외 특별전형 선발(IV-2 참조)
- 4) 세부내용: ‘과학고 자기주도학습전형 매뉴얼’(붙임 4) 참조

다. 대상학교

세종과학고등학교, 한성과학고등학교

2. 예술계열의 특수목적고등학교(6교)

가. 지원 방법

- 1) 모집단위: 전국
- 2) 내용: 입학원서 등 제출서류를 갖추어 해당 고등학교에 직접 개별 지원

나. 선발(전형) 방법

- 1) 선발기준: 중학교 내신성적(교과+출결)과 실기고사로 선발
- 2) 주요내용
 - 가) 실기고사 비율은 학교 및 학과별로 40~60%(학교별 전형 계획에 따름)
 - 나) 교과성적은 2학년 1학기~3학년 1학기 성적 반영(졸업생은 2,3학년 4개 학기 반영)
 - 다) 출결은 1학년 1학기~3학년 2학기 기준일까지 성적 반영
(졸업생은 전 학년 반영)
- 3) 특수교육대상자는 정원 외 특별전형 선발(IV-2 참조)

다. 대상학교

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덕원예술고등학교,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서울예술고등학교, 선화예술고등학교



3. 체육계열의 특수목적고등학교(1교)

가. 지원 방법

- 1) 모집단위: 전국
- 2) 내용: 입학원서 등 제출서류를 갖추어 서울체육고등학교에 직접 개별 지원

나. 선발(전형) 방법

1) 선발기준

- 가) 특별전형: 입상실적, 내신성적 산출 선발
- 나) 일반전형: 입상실적, 실기고사, 체격 및 종목적성평가, 내신성적 산출 선발

2) 주요내용

- 가) 영역별 산출방법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후 학교장이 정함
 - 나) 해당 종목별 선택 지원(입상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음)
- 3) 세부 내용: '서울체육고 입학전형 매뉴얼'(붙임 6) 참조

다. 대상학교

서울체육고등학교

4.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마이스터고등학교, 5교)

가. 지원 방법

- 1) 모집단위: 전국
- 2) 내용: 입학원서 등 제출서류를 갖추어 해당 고등학교에 직접 개별 지원

나. 선발(전형) 방법

1) 선발기준: 교과성적, 인성, 면접 및 학교별 선택 요소로 선발

2) 주요내용

- 가) 교과성적 반영비율: 일반전형(50% 이하), 특별전형(30% 이하)
- 나) 인성요소: 필수(출결, 봉사활동), 선택(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창의적 체험활동 등)
- 다) 면접요소: 학생의 적성, 진학동기, 향후 진로 계획 등 성장가능성
(총점의 10% 이상 반드시 반영)

3) 세부 내용: '산업수요맞춤형고(마이스터고) 입학전형 매뉴얼'(붙임 7) 참조

다. 대상학교

미림마이스터고등학교, 서울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 서울로봇고등학교, 서울반도체고등학교,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5. 특성화고등학교(67교)

가. 지원 방법

- 1) 모집단위: 서울특별시, 전국·광역단위(학교별 전형요강에 따름)
- 2) 내용: 입학원서 등 제출 서류를 갖추어 개별 지원
 - 가) 서울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 출신 중학교에서 작성 제출
 - 나) 다른 시·도 중학교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 검정고시 등: 해당 고등학교에 직접 작성 제출

나. 선발(전형) 방법

- 1) 선발기준
 - 가) 일반전형: 교육감이 일괄 산출한 절대평가 방식의 중학교 성적을 기준으로 선발
 - 나) 특별전형: 학교별 전형요강에서 정한 기준에 의해 선발
- 2) 특별전형 유형: 미래인재 특별전형, 학교장 특별전형
- 3) 세부 내용: ‘특성화고 입학전형 매뉴얼’(붙임 8) 참조

다. 대상학교

서울특별시교육청 관내 특성화고등학교 67교

※ 특성화고등학교 입학·취업 [하이잡 <https://high-job.sen.go.kr>] 참조

6. 일반고등학교 중 예·체능계고등학교(1교)

가. 지원 방법

- 1) 모집 단위: 서울특별시
- 2) 내용: 입학원서 등 제출서류를 갖추어 해당 고등학교에 직접 개별 지원

나. 선발(전형) 방법 및 일정

- 1) 예술계열의 특수목적고등학교와 동일함

다. 대상학교

서울미술고등학교

7. 관악예술과(1교)

가. 지원 방법

- 1) 모집단위: 서울특별시
- 2) 내용: 입학원서 등 제출서류를 갖추어 해당 고등학교에 직접 개별 지원

나. 선발(전형) 방법

- 1) 선발기준: 실기고사(가창, 악기, 시창, 청음 등)로 선발
- 2) 세부 내용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학교장이 정함

다. 대상학교

염광고등학교

※ 관악예술과 운영학교는 우리교육청 승인 결과와 학교의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III 후기고등학교 전형



1. 교육감 선발 후기고등학교(210교)

가. 원서 제출 방법

1) 원서 제출처

- 가) 서울특별시 내 중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위탁생 포함)
: 출신중학교
- 나) 다른 시·도 중학교 졸업자로서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 거주지 관할 교육지원청
- 다)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
: 거주지 관할 교육지원청
- 라) 다른 시·도 특성화 중학교 및 전국단위 모집 자율학교로 지정된 중학교 졸업예정자 중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 거주지 관할 교육지원청
- 마) 고등학교 특례 입학대상자 중 국내 중학교에 편입한 사실이 없는 자로서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 거주지 관할 교육지원청

2) 학교별 및 지원 구분별 원서 수합: 거주지 관할 교육지원청

나. 선발(전형) 방법

- 1) 전기고등학교 전형에 선발된 자와 추가합격자는 후기고등학교 전형 대상에서 제외
- 2) 교육감이 일괄 산출한 절대평가 방식의 중학교 성적을 기준으로 전체 정원* 만큼 합격자(배정대상자)를 남녀 구분 없이 선발
* 일반고 전체정원 = 일반학급 정원 + 과학중점학급 정원
- 3) 모집정원 대비 지원자가 초과할 경우 고입전형명부(동점자 우선순위* 적용)를 기준으로 합격자(배정대상자) 결정
* 고입전형을 위한 중학교 성적 산출 지침(붙임 3) 참조

다. 지원 및 배정 방법: 고교선택제(선 지원 후 추천)

1) 지원

- 가) 1단계: 서울특별시 전체 고등학교 중에서 서로 다른 2개교 선택·지원
- 나) 2단계: 거주지 일반학교군 소속 고등학교 중에서 서로 다른 2개교 선택·지원
다만 특수목적고등학교(외국어고등학교·국제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전국단위 모집학교 포함) 지원자 중에서 희망하는 경우 2단계에 선택·지원할 수 있음

2) 배정

- 가) 1단계(단일학교군): 지원자 중에서 지망 순위별로 학교별 모집 정원의 20% (중부학교군 60%)를 전산추첨 배정
- 나) 2단계(일반학교군): 지원자 중에서 지망 순위별로 학교별 모집 정원의 40%를 전산추첨 배정 (추가추첨 배정* 포함)

* 추가추첨 배정: 1-2단계 배정 후 각 단계별 잔여정원이 발생한 학교에 대하여 해당학교를 지원했으나 배정되지 않은 학생을 대상으로 잔여정원만큼 추첨 배정



다) 3단계(통합학교군): 1-2단계에서 전산추첨 배정되지 않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통학편의, 1-2단계 지원사항, 학교별 배치여건 및 적정 학급 수 유지, 종교 등을 고려하여 통합학교군 범위 내에서 전산추첨 배정

- ※ 단, 중부학교군의 각 단계별 학교정원은 학교 배치여건에 따라 필요시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
- ※ 학교의 배치여건 등으로 인해 지원자가 지원하지 않은 학교 또는 지원자의 종교와 일치하지 않는 학교로 배정될 수 있음

라. 대상학교

교육감 선발 후기고등학교 - 가락고등학교 등 210교
 ※ 서울고교홍보사이트 [하이인포 <https://hinfo.sen.go.kr>] 참조

2. 예술·체육·과학중점학급 운영학교(26교)

가. 지원 방법

공 통: 중점학급 운영학교 중 1교만을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예술·체육중점학급 운영학교(4교, 학교장 선발)

- 가) 학교별 전형요강에 따라 제출서류 등을 갖추어 해당 고등학교에 직접 개별 지원
- 나) 교육감 선발 후기고 원서에 지원사항 작성·제출

2) 과학중점학급 운영학교(22교, 교육감 선발)

- 가) 교육감 선발 후기고 원서에 지원사항 작성·제출

나. 선발(전형) 방법

1) 예술·체육중점학급 운영학교(4교, 학교장 선발)

- 가) 「자기주도학습전형」으로 1·2단계를 거쳐 선발
- 나) 1단계: 중학교 내신성적과 자기소개서로 정원의 1.5배수 선발
- 다) 2단계: 1단계 성적과 면접으로 최종 합격자 선발
- 라) 세부 내용: ‘예술·체육중점학급 운영학교 자기주도학습전형 매뉴얼’(붙임 10) 참조

2) 과학중점학급 운영학교(22교, 교육감 선발)

- 가) 교육감 선발 후기고등학교의 선발(전형) 방법과 동일
- 나) 배정 방법
 - (1) 1단계: 학교 소재 일반학교군 거주 지원자 중, 학교별 모집정원의 50%를 전산추첨 배정
 - (2) 2단계: 1단계 탈락자를 포함하여 다른 학교군 거주 지원자 중, 나머지 50%를 전산추첨 배정



다. 대상 학교

- 음악중점학급 운영학교(2교) - 대원여자고등학교, 영신여자고등학교
- 미술중점학급 운영학교(1교) - 송곡여자고등학교
- 체육중점학급 운영학교(1교) - 송곡고등학교
- 과학중점학급 운영학교(22교)
 - 강일고등학교, 경기고등학교, 경북고등학교, 대진고등학교, 마포고등학교, 명덕고등학교, 무학여자고등학교, 반포고등학교, 방산고등학교, 서울고등학교, 선정고등학교, 송의여자고등학교, 신도림고등학교, 여의도고등학교, 영등포고등학교, 예일여자고등학교, 용산고등학교, 용화여자고등학교, 잠신고등학교, 창동고등학교, 해원여자고등학교, 휘경여자고등학교

※ 중점학급 운영학교는 우리교육청 지정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 예술·체육·과학중점학급 운영학교 내에서 교육과정 변경(중점학급⇒일반학급) 불가

3. 학교장 선발 후기고등학교(25교)

가. 특수목적고등학교(외국어·국제계열: 7교)

1) 지원 방법

가) 모집단위

- (1) 외국어고: 서울특별시, 외국어고가 없는 시·도
- (2) 국제고: 서울특별시, 국제고가 없는 시·도

나) 내용: 입학원서 등 제출서류를 갖추어 해당 고등학교에 직접 개별 지원

2) 선발(전형) 방법

가) 선발기준: 입학전형위원회에 의한 「자기주도학습전형」으로 선발

나) 주요내용

- (1) 1단계: 영어 교과성적 및 출결점수(감점)로 정원의 1.5배수 선발
- (2) 2단계: 1단계 성적과 면접점수로 최종합격자 선발

다) 세부 내용: '외국어고·국제고 자기주도학습전형 매뉴얼'(붙임 5) 및 '2026학년도 신입생 입학전형 요강' 참조

3) 대상학교

- 서울국제고등학교, 대원외국어고등학교, 대일외국어고등학교, 명덕외국어고등학교, 서울외국어고등학교,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 한영외국어고등학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특수목적고등학교)제4항에 따라 대상학교 변동 가능

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16교)

1) 지원 방법

가) 모집단위

- (1) 경희고등학교 등 15교: 서울특별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가 없는 시·도 중 서울특별시교육감과 협의한 지역(경남, 제주, 세종)
- (2) 하나고등학교: 서울특별시, 전국(사회통합전형 중 균인 자녀, 다문화가족 자녀)



나) 내용

- (1) 입학원서 등 제출서류를 갖추어 해당 고등학교에 직접 개별 지원
 - ※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성적 제한 없이 지원 가능함
 - ※ 사회통합전형 지원자는 증빙서류도 함께 제출함
- (2) 2단계 면접대상자만 자기소개서, 학교생활기록부 등 제출서류를 지원학교에 제출
 - ※ 면접대상자 선발 시, 서울 방식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추첨, 하나고등학교(서울 이외 방식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별도방식에 의해 선발함

2) 선발(전형) 방법

- 가) 선발기준: 추첨 또는 입학전형위원회에 의한 「자기주도학습전형」 으로 선발
- 나) 경희고등학교 등 15교: 학교별 입학전형요강에 따라 면접 없이 추첨만으로 선발하거나, 일정 기준(지원율 조건)을 충족할 경우 면접대상자 추첨 후 면접으로 선발
 - ※ 면접 실시 기준은 2025. 9월에 발표하는 학교별 입학전형요강 참조

다) 하나고등학교

- (1) 1단계: 교과성적 및 출결점수(감점)로 정원의 1.5~2배수 선발
- (2) 2단계: 1단계 성적과 서류·면접점수로 최종합격자 선발

라) 세부내용: ‘자율형 사립고 자기주도학습전형 매뉴얼’(붙임 9) 및 ‘2026학년도 신입생 입학전형 요강’ 참조

3) 대상학교

경희고등학교, 대광고등학교, 배재고등학교, 보인고등학교, 선덕고등학교, 세화고등학교, 세화여자고등학교, 신일고등학교, 양정고등학교, 이화여자고등학교, 중동고등학교, 중앙고등학교, 하나고등학교, 한양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현대고등학교, 휘문고등학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자율형 사립고등학교)제6항에 따라 대상학교 변동 가능

다. 학교장 선발 일반고등학교(2교)

1) 지원 방법

- 가) 모집단위: 서울특별시
- 나) 내용: 입학원서 등 제출서류를 갖추어 해당 고등학교에 직접 개별 지원

2) 선발(전형) 방법: 학생 선발은 학교별 신입생 입학전형 요강 참조

3) 대상학교

한광고등학교, 한국삼육고등학교



IV 특별학생 및 추가전형



1. 고입 특례대상자

가. 대상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1호~제4호

구분	자 격 요 건	비고
제1호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 9년 이상의 학교교육을 이수하거나,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정원 내
제2호	가목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하여 국내의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함)	정원 외
	나목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국내의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다목 외국인 학생으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국내의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외국에서 2년 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함)	
제3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의한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이북지역의 학교에서 2년이상 재학하고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의 중학교에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정원 외
제4호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 과정을 마친 사람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자 등	정원 내

※ 편입학은 재취학 포함

※ 제2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외국학교 입학에 소요되는 기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재학기간 또는 거주기간이 2년에 미달된 때(2개월 이내)에는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특례입학자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선정



나. 지원 및 선발(배정) 방법

구분	지원 방법	선발(배정) 방법
학교장 선발 전·후기고	지원하고자 하는 해당 고등학교에 직접 개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별 전형요강에 따라 학교장 선발 • 제1호 및 제4호는 정원 내 선발 • 제2호 및 제3호는 학교별 모집 정원의 2% 내에서 정원 외 선발
교육감 선발 후기고	출신중학교에 원서 제출 후, 학교별로 관할 교육지원청에 일괄 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례대상자는 교육감 선발 후기고 전형에 전원 선발 • 제1호 및 제4호는 정원 내 배정(전산추첨) • 제2호 및 제3호는 학교별 정원의 2% 내에서 정원 외 배정(전산추첨)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1조제2호에 따라 특례 제2호 및 제3호는 정원 외 선발(배정)

※ 「2026학년도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특례 신입학 업무 처리 지침」 참고

2. 특수교육대상자

가. 대상자: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

나. 선발(배치) 방법

1) 자체 선발

가) 정원 내 선발(사회통합전형, 총 23교): 특수목적고등학교(외국어·국제계열, 7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16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자율형 사립고등학교)제6항에 따라 대상 학교 변동 가능

나) 정원 외 선발(특별전형, 총 10교): 영재학교(1교), 특수목적고등학교(과학·예술계열, 8교), 일반고등학교 중 예·체능계고등학교(1교)

- 선발인원: 학교별 모집인원의 정원 외 3% 이내(학교별 전형요강에 따름)

2) 교육감 지정·배치

가) 배치방법: 「서울특별시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당 학생(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 능력, 거주지, 보호자의 의견 및 지역별 교육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를 지정·배치함

나) 대상학교

(1) 교육감 선발 후기고등학교 일반 및 특수학급

(2) 특성화고등학교 일반 및 특수학급

다. 세부기준: 「2026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 고등학교 신입생 선정 및 배치 계획」 참고



3. 보훈자 자녀

가. 대상자: 국가보훈부에서 “교육지원대상자”로 지정된 자

나. 지원 및 선발(배정) 방법

구분	지원 방법	선발(배정) 방법
학교장 선발 전·후기고	지원하고자 하는 해당 고등학교에 직접 개별 지원	교육감이 승인한 학교별 전형요강에 따라 학교장 선발
교육감 선발 후기고	출신중학교에 원서 제출 후, 학교별로 관할 교육지원청에 일괄 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감 선발 후기고 전형(Ⅲ-1-나-2)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선발 학교별 정원의 3% 내에서 정원 외 배정 (전산추첨)

4. 체육특기자

가. 대상자: 학교장이 추천하고,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입학 체육특기자 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최종 선발한 자

나. 지원 및 선발(배정) 방법

구분	지원 방법	선발(배정) 방법
학교장 선발 전·후기고	지원하고자 하는 해당학교에 직접 개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육특기자는 입학전형 결과에 불구하고 선발 배정(단, 학교장 선발고는 학교별 전형요강에 따라 선발)
교육감 선발 후기고	출신중학교에 원서 제출 후, 학교별로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체육특기자 대조 확인 및 일괄 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감 선발 후기고의 경우 학교군에 제한 없이 체육특기학교와 종목별 인원을 정하고 교육감이 배정 정원 내 선발(배정)

※ 세부내용은 「2026학년도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입학 체육특기자 선발 기본계획」에 따름



5. 외국인 유학생

가. 대상자: 국내 고등학교* 유학을 희망하는 외국국적** 학생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방송통신고등학교·각종학교는 제외)

** 대한민국 국적 이중소지자는 제외

나. 지원 및 선발 방법

구분	지원 방법	선발 방법
학교장 선발 전후기고	지원하고자 하는 해당 고등학교에 직접 지원	정원 외 선발
	모집인원 등 구체적인 선발방법은 교육감이 승인한 학교별 전형 요강에 따라 학교장 선발	

※ 단,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따라 무상교육기관인 경우에는 제외

6. 지체장애인 등(교육감 선발 후기고에 한함)

가. 지원 대상

-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지체장애인으로 등록하고,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발급 받은 자
- 2)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희귀질환을 가진 자
- 3) 압, 제1형 당뇨 또는 그 밖에 중증의 난치질환을 가진 자

다. 심사

- 1) 1차 심사: 서류심사
- 2) 2차 심사: 대면심사(1차 심사 결과 대면심사 대상자로 판정된 자)

라. 지원 및 선발(배정) 방법

구분	지원 방법	선발(배정) 방법
교육감 선발 후기고	출신중학교에 원서 제출 후, 학교별로 관할 교육지원청에 일괄 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감 선발 후기고 전형(Ⅲ-1-나-2)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선발 • 학교별 정원과 상관없이 거주지 인근의 학교로 정원 외 배정

마. 세부기준: 2025. 9월 중 「2026학년도 근거리 통학 대상자 심사·지정 계획」 수립·발표 예정



7. 특이 배정자(교육감 선발 후기고에 한함)

가. 대상자

- 1) 쌍둥이(재혼가정 동일학년 형제·자매 포함)
- 2) 교직원 자녀
- 3) 소년소녀가장 및 동 가장의 형제·자매
- 4)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부모의 자녀
 -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녀
(2019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이전 3급 이상 중증장애)
- 5) 학교폭력 피해 학생
 -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해자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제1항제8호 조치(전학)를 받은 경우
- 6) 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 학생(학생이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인 경우도 포함)
- 7) 성폭력 피해 학생(학생이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인 경우도 포함)
- 8) 교육활동 침해 학생
 - ※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침해 학생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5조(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등)제2항제6호 조치(전학)를 받은 경우

나. 선발(배정) 방법

- 1) 선발방법: 교육감 선발 후기고 전형(III-1-나-2))에 의해 선발된 배정대상자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
 - 2) 배정방법
 - 가) 동일교 배정: 쌍둥이 모두 거주지 학교군 내 동일교를 지원*한 경우
 - * 지원학교 및 지망 순서가 동일해야 함
 - 나) 타교 배정
 - (1) 쌍둥이가 서로 다른 학교 배정을 희망한 경우
 - (2) 교직원 자녀가 부모의 현 재직 학교와 다른 학교 배정을 희망한 경우
 - (3) 학교폭력으로 전학 조치된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분리 배정
 - ※ 동일 교지 학교(8교)는 학교폭력 분리 배정 시 동일교로 간주 처리
(북부) 청원고, 청원여고
(강서양천) 광영고, 광영여고 / 명덕고, 명덕여고
(성동광진) 대원고, 대원여고
 - (4) 교육활동 침해 학생은 피해교원의 보호를 위해 충분한 거리 등을 고려하여 분리 배정
 - 다) 거주지 인근 학교 배정
 - (1) 소년소녀가장 및 동 가장의 형제·자매인 학생이 희망한 경우
 - (2)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부모의 자녀인 학생이 희망한 경우
 - 라) 거주지와 상관없이 비공개 배정(비밀 보장)
 - (1) 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 학생
 - (2) 성폭력 피해 학생
- 3) 배정인원: 정원 내 배정



8. 입학전 배정(교육감 선발 후기고에 한함)

가. 대상자

1) 거주지가 이전된 자

가) 서울특별시교육감 선발 후기고 입학 예정자 중 본배정 원서접수 마감 이후부터 입학전 배정 원서접수 이전까지(2025.12.8.(월)~2026.2.2.(월)) 전 가족의 거주지가 배정받은 학교의 학교군과 본배정 원서접수 당시 거주했던 학교군 이외의 지역으로 변동된 자

나) 다른 시·도 후기고(일반고, 자공고) 입학 예정자 중 입학전 배정 원서접수 이전까지(2026.2.2.(월)) 전 가족의 거주지가 서울특별시로 변동된 자 또는 전 가족이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

2)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거주지 이전과 무관)

가) (근거리 통학 대상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지체장애 및 희귀·중증의 난치 질환 등으로 신체의 기능 장애가 현저하여 배정받은 학교로 통학하기 어려운 경우

※ 「근거리통학대상자심사위원회」에서 근거리 통학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한함

나) 재혼가정의 동일 학년인 자녀들이 동일교로 배정받았으나 타교 배정을 희망하는 경우

다) 교직원 자녀가 부모의 현 재직학교(발령 예정 학교 포함)와 다른 학교 배정을 희망하는 경우

라) 소년소녀가장 및 동·가장의 형제·자매

마)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부모의 자녀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녀 (2019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이전 3급 이상 중증장애)

바) 학교폭력 피해 학생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해자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제1항제1호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

사) 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 학생(학생이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인 경우도 포함)

아) 성폭력 피해 학생(학생이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인 경우도 포함)

자) 교육활동 침해 학생

※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침해 학생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5조(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등)제2항제6호 조치(전학)를 받은 경우

나. 지원방법: 입학전 배정 신청자는 학교 선택 불가

- 단, 거주지 이전자 중 쌍둥이는 동일교 또는 타교 배정 신청 가능

다. 배정방법

1) 배정 가능 인원

가) 2026학년도 고입전형 이후 학교별 결원

나) 학교별 정원의 3%(정원 외)



2) 거주지가 이전된 자

- 가) 통학편의, 학교별 배치여건, 종교 등을 고려하여 일반학교군 내에서 전산추첨 배정
- 나) 일반학교군 내에서 모두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 통합학교군에서 배정
- 다) 쌍둥이는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동일교 또는 타교 배정

3)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거주지 이전 무관)

가) 거주지 인근 학교 배정

- (1) 소년소녀가장 및 동 가장의 형제·자매인 학생이 희망한 경우
- (2)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부모의 자녀인 학생이 희망한 경우
- (3) 근거리 통학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나) 거주지와 상관없이 비공개 배정(비밀보장)

- (1) 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 학생
- (2) 성폭력 피해 학생

다) 피해 학생·교원의 보호를 위해 충분한 거리 등을 고려하여 분리 배정

(1) 학교폭력 피해 학생

- ※ 동일 교지 학교(8교)는 학교폭력 분리 배정 시 동일교로 간주 처리
(북부) 청원고, 청원여고
(강서양천) 광영고, 광영여고 / 명덕고, 명덕여고
(성동광진) 대원고, 대원여고

(2) 교육활동 침해 학생

라) 타교 배정

- (1) 교직원 자녀
- (2) 재혼가정의 동일 학년인 자녀들이 동일교로 배정받은 경우
- ※ 2025. 12월 「입학전 배정 시행 계획」 수립·발표 예정

9. 고등학교 입학 추가전형

가. 대상자

-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로서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면서 2026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합격한 사실이 없는 자 (등록 포기 여부와 상관없음)

나. 선발(배정)방법

1) 전기고등학교

- 교육감이 승인한 학교별 전형요강을 기준으로 결원수 범위 내에서 신학년도 새학기 시작일부터 당해 학교의 장이 학교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일자까지 수시 추가모집 실시

2) 후기고등학교

- 학교장 선발 후기고: 전기고등학교와 동일
- 교육감 선발 후기고: 2026학년도 교육감 선발 후기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위한 중학교 성적을 적용하여 전산추첨 배정(2026. 5월 예정)
- ※ 추가전형 신청자는 학교 선택 불가



V

행정 사항



1. 이중지원의 금지

가. 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제84조, 제85조, 제86조 및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4조

나. 개념

- 1) 전기고등학교 중에서 1개 학교만 지원 가능
 - 접수일자 및 전형시기, 합격여부와 관계없이 적용
 - 영재학교 간 중복지원 불가
- 2) 해당 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합격자는 추가모집에 지원 불가
 - 전·후기고등학교에 합격한 사실이 없는 자에 한해 추가모집 지원 가능
- 3) 전기고등학교에 합격(합격 후 등록하지 않은 자 포함)한 자가 학교의 입학울 포기한 경우 당해 학년도에 다른 학교 지원 불가

다. 적용범위: 서울특별시 관내 고등학교는 물론 다른 시·도 소재 모든 고등학교에도 적용

라. 이중지원 사례

- 1) 전기고등학교를 2교 이상 지원하는 경우(합격여부 무관)
 - ※ 과학고(세종과학고, 한성과학고)와 영재학교(서울과학고)는 다름을 유의
 - (예사1) 과학고, 예술고, 체육고에 지원하여 불합격한 자는 서울특별시 및 다른 시도 특성화고에 지원 불가
 - (예사2) 예술고에 온라인 원서접수 및 전형료 결제를 마친 자는 서울특별시 및 다른 시도 예술고에 지원 불가
 - (예사3) 예술고에 지원하여 불합격한 자는 관악예술과 정시모집에 지원 불가
- 2) 특성화고등학교 특별전형 합격자가 특성화고등학교 일반전형에 지원하는 경우
- 3) 전기고등학교 합격자가 후기고등학교에 지원하는 경우
- 4) 후기고등학교 합격자가 전기고등학교 추가모집에 지원하는 경우
 - ※ 해당 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추가선발 불가
- 5) 후기고등학교 지원 후 불합격이 결정되지 않은 자가 다른 후기고등학교에 지원하는 경우
 - ※ 불합격이 확인되지 아니한 자는 서울특별시 및 다른 시·도 고등학교에 지원 불가
 - ※ 외교, 국제고, 자사고 중 1개교에 온라인 원서접수 및 전형료 결제를 마친 자는 서울특별시 및 다른 시·도 외교, 국제고, 자사고에 지원 불가
- 6) 교육감 선발 후기고등학교 합격자(배정대상자)가 학교장 선발 후기고등학교 추가모집에 지원하는 경우
- 7) 다른 시·도 고등학교 합격자가 학교장 선발 후기고등학교 추가모집에 지원하는 경우
- 8) 다른 시·도 고등학교 합격자가 교육감 선발 후기고등학교 추가전형에 지원하는 경우



마. 이중지원 금지의 예외

- 1) 전기고등학교 불합격자 및 미지원자가 후기고등학교에 지원하는 경우
- 2)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마이스터고등학교) 불합격자가 특성화고등학교에 지원하는 경우
- 3) 특성화고등학교 특별전형 불합격자가 특성화고등학교 일반전형에 지원하는 경우
- 4) 영재학교(서울과학고등학교) 합격(불합격)자가 다른 학교에 지원하는 경우
 - ※ 단, 영재학교 간 중복지원은 불가(「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4조(영재학교의 입학자격 등)제3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입학전형의 지원제한))
- 5) 전기고등학교 불합격자 및 미지원자가 전기고등학교 추가모집에 지원하는 경우
- 6) 외국어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원자가 교육감 선발 후기고등학교 2단계에 지원하는 경우
- 7) 경기 한민고등학교(일반고, 군인자녀 전형) 또는 경북 영천고등학교(군인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 지원자가 후기고등학교에 지원하는 경우
 - 지원자는 한민고 또는 영천고와 서울특별시 및 다른 시·도 후기고등학교의 이중지원은 가능하나, 한민고 또는 영천고 합격 시 다른 후기고등학교 전형 대상에서 제외
 - ※ 「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제5조

바. 이중지원 예방

- 1) 단위학교별로 출신학교장의 책임 하에 이중지원 금지 이행 확인
 - ※ 반드시 지원대장 작성 후 보관 철저
- 2) 전형기간 이전에 학생을 모집하여 예비 합격자를 발표하는 것 금지

2. 거주사실 조사

가. 목적: 특정학교 입학에 위한 가거주, 위장전입 등 사회질서 위반행위 예방

나. 거주사실 조사 및 확인

- 1) 서울특별시 소속 중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출신 중학교
- 2) 다른 시·도 졸업자 및 검정고시 합격자 등: 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
- 3) 확인사항: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에 전 가족 실제 거주 여부

다. 조치 사항

- 1) 가거주로 확인된 자는 실거주지로 주민등록을 환원하도록 조치
- 2) 교육감 선발 후기고등학교 배정(대상)자의 가거주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실거주지 학교군의 학교로 환원 또는 전학 조치 실시

3. 중학교 성적 관리

가. 적용지침: 「서울특별시교육청 중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및 「단위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

나. 확인사항: 단위학교는 성적 산출 전체 과정을 철저히 확인하고 수시 점검



4. 연수 및 홍보

가. 연수: 고입전형 업무 담당자 및 3학년 학급담임에 대한 수시 연수 실시

나. 홍보

- 1) 고등학교 입학 예정자와 학부모가 고등학교 전형에 관하여 정확히 숙지할 수 있도록 단위학교별로 홍보 및 안내 실시
- 2) 서울특별시교육청 누리집(교육정보-진학안내-고입자료실), 하이인포(자료실, 홍보영상 등)에 탑재된 고입전형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안내

5. (학교장)진학업무 유의사항

가. 내용: 이중지원 금지 이행 확인, 입학원서 기재 및 입력사항 확인(원서누락, 지원학교명 착오 입력 등)

나. 학교장은 모든 전형 업무 기준을 준수하여 학생·지원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 철저

6. (교육감)진학업무 지도·감독

가. 관련규정: 「초·중등교육법」 제25조, 제30조의5, 제30조의7

나. 내용: 단위학교의 고등학교 신입생 진학업무 소홀로 인해 업무처리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참고】 교육감 선발 후기고등학교 원서입력 오류 사례

- ○○중학교에서 원서 최종 제출 전, 담임교사가 3번 A학생의 지원학교 변경 요청 사항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4번 B학생의 지원학교를 수정하여 B학생이 거주지와 먼 학교로 배정됨
- △△중학교 C학생이 자사고 지원과 자사고와 일반고 이중 지원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담임교사의 착오로 나이스 원서 입력이 누락되어 미배정됨
- 학생은 1단계 1지망 ☆☆고, 2지망 ○○고를 지원하였으나, 담당교사의 착오로 1지망 ☆☆고, 2지망 ○□고를 입력하여 ○□고로 최종 배정됨



붙임 1

2026학년도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입학전형 주요 일정

구분	학교계열		입학원서 접수	합격자 발표일		
전 기 고 등 학 교	학교장 선발고	과 학교	2025. 8. 25.(월) ~ 8. 27.(수)	2025. 11. 28.(금)		
		서울 체고	특별	2025. 10. 27.(월) ~ 10. 29.(수)	2025. 10. 31.(금)	
			일반	2025. 11. 3.(월) ~ 11. 5.(수)	2025. 11. 11.(화)	
		예술계고(서울미고 포함)		2025. 10. 14.(화) ~ 10. 17.(금)	2025. 10. 28.(화)	
		마이스터고(특별/일반)		2025. 10. 20.(월) ~ 10. 23.(목)	2025. 11. 5.(수)	
		특성화고	특별	2025. 11. 21.(금) ~ 11. 24.(월)	2025. 11. 27.(목)	
			일반	2025. 11. 28.(금) ~ 12. 1.(월)	2025. 12. 2.(화)	
		관악예술과(염광고)		2025. 11. 17.(월) ~ 11. 19.(수)	2025. 11. 21.(금)	
		추가 모집	덕원예고	2025. 11. 21.(금) ~ 11. 24.(월)	2025. 11. 27.(목)	
			관악예술과(염광고)	2025. 12. 1.(월) ~ 12. 2.(화)	2025. 12. 3.(수)	
특성화고	2025. 12. 2.(화) ~ 12. 3.(수)		2025. 12. 3.(수)			
후 기 고 등 학 교	학교장 선발고	한광고, 한국삼육고	2025. 12. 1.(월) ~ 12. 2.(화)	2025. 12. 3.(수)		
		외국어고·국제고		2025. 12. 3.(수) ~ 12. 5.(금) (면접대상자 서류 제출기간) 2025. 12. 8.(월) ~ 12. 10.(수)	2025. 12. 19.(금)	
		자사고	경희고 등 15교	2025. 12. 3.(수) ~ 12. 5.(금) (면접대상자 서류 제출기간) 2025. 12. 10.(수) ~ 12. 11.(목)	2025. 12. 26.(금)	
			하나고	2025. 12. 3.(수) ~ 12. 5.(금) (면접대상자 자기소개서 온라인 제출기간) 2025. 12. 11.(목) ~ 12. 15.(월) 10:00	2025. 12. 31.(수)	
		예술·체육중점학급		2025. 12. 3.(수) ~ 12. 5.(금)	2025. 12. 17.(수)	
		교육감 선발고(일반고)		2025. 12. 3.(수) ~ 12. 5.(금)	2026. 1. 7.(수)	
		추가 모집	한광고, 한국삼육고, 예술·체육중점학급	2026. 1. 7.(수) ~ 1. 8.(목)	2026. 1. 12.(월)	
			외국어고·국제고·자사고	2026. 1. 12.(월) ~ 1. 13.(화)	2026. 1. 16.(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감 선발고 결과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정학교 발표: 2026. 1. 29.(목) ※ 교육감 선발 후기고 합격일(2026. 1. 7.(수))은 배정대상자를 발표하는 것임 - 입 학 등 록: 2026. 1. 29.(목) ~ 1. 30.(금) ■ 교육감 선발고 입학전 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 터 넷 접 수: 2026. 2. 3.(화) ~ 2. 5.(목) - 서 류 제 출: 2026. 2. 3.(화) ~ 2. 5.(목) - 배정학교 발표: 2026. 2. 19.(목) - 입 학 등 록: 2026. 2. 19.(목) ~ 2. 20.(금) 				

※ 향후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임 2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학교군

▣ **단일학교군(1개):** 서울특별시 전 지역을 단위로 하는 학교군

▣ **일반학교군(11개):** 교육지원청 관할지역을 단위로 하는 학교군

구분	소속 지역	구분	소속 지역	구분	소속 지역
동부	동대문구, 중랑구	중부	종로구, 중구, 용산구	동작관악	동작구, 관악구
서부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강동송파	강동구, 송파구	성동광진	성동구, 광진구
남부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강서양천	강서구, 양천구	성북강북	강북구, 성북구
북부	노원구, 도봉구	강남서초	강남구, 서초구	총 11개	

▣ **통합학교군(19개):** 서로 인접한 2개의 일반학교군을 단위로 하는 학교군

구분	소속 지역	구분	소속 지역
동부·북부	동부, 북부 일반학교군	북부·성북강북	북부, 성북강북 일반학교군
동부·중부	동부, 중부 일반학교군	중부·강남서초	중부, 강남서초 일반학교군
동부·성동광진	동부, 성동광진 일반학교군	중부·동작관악	중부, 동작관악 일반학교군
동부·성북강북	동부, 성북강북 일반학교군	중부·성동광진	중부, 성동광진 일반학교군
서부·남부	서부, 남부 일반학교군	중부·성북강북	중부, 성북강북 일반학교군
서부·중부	서부, 중부 일반학교군	강동송파·강남서초	강동송파, 강남서초 일반학교군
서부·강서양천	서부, 강서양천 일반학교군	강동송파·성동광진	강동송파, 성동광진 일반학교군
남부·중부	남부, 중부 일반학교군	강남서초·동작관악	강남서초, 동작관악 일반학교군
남부·강서양천	남부, 강서양천 일반학교군	강남서초·성동광진	강남서초, 성동광진 일반학교군
남부·동작관악	남부, 동작관악 일반학교군	총 19개	



 붙임 3

고입전형을 위한 중학교 성적 산출 지침

학교지원과

1 기본 원칙

- 가.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위한 중학교 성적 산출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 「서울특별시교육청 중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따라 작성한 학생별 학교생활기록부를 기초로 하여 본 지침에 따라 산출한다.
- 나. 본 지침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특성화고등학교 일반전형 및 교육감 선발 후기고등학교 신입생 선발을 위한 것으로 그 외 학교장 선발 후기고등학교는 자체 전형 요강에 따라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다.
- 다. 고등학교 입학전형 총점은 100점으로 하고, **중학교 교과 학습발달상황**(이하 “교과”라 함) **점수**(80점)와 **출결상황**(이하“출결”이라 함) **점수**(20점)로 구성한다.

고입전형 총점	=	교과 점수	+	출결 점수
100점		80점		20점

- 라. 교과 점수는 중학교 2, 3학년에서 이수한 모든 과목수 대비 최하위 성취도 과목수 비율에 따라 최고 80점으로 환산하고, 출결 점수는 전 학년(全 學年) 결석일수에 따라 최고 20점으로 환산하여 산출한다.
- 마.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위탁생의 성적은 원재적교 학교생활기록부를 기초로 본 지침에 따라 산출한다.
- 바. 서울특별시 소재 중학교 졸업생과 다른 시도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도 학교생활기록부를 기초로 본 지침에 따라 동일한 방법으로 산출한다.

**2 교과 점수 산출 방법**

[별표 1] 참조

가. 교과 점수는 최고 80점이 되도록 환산하여 산출한다.

나. 교과 점수는 학교생활기록부를 기초로 다음 산출식에 따라 산출한다.

교과 점수 산출식

$$\text{교과 점수} = \left(1 - \frac{\text{최하위 성취도 과목수}}{\text{총 이수 과목수}}\right) \times 80$$

- 총 이수 과목수: 2, 3학년에 걸쳐 1학기 이상 이수한 모든 과목의 수
※ 1학기 이상 이수한 과목 수가 없을 경우 교과점수는 0점
- 최하위 성취도 과목수: 최하위 성취도(5단계 평가 교과는 E, 3단계 평가 교과는 C)를 받은 과목의 수
- 이수 여부 'P' 입력 과목은 교과 점수 산출 대상에서 제외
- 교과 점수는 소수점 아래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셋째 자리까지 산출

3 출결 점수 산출 방법

[별표 2] 참조

가. 출결 점수는 최고 20점이 되도록 환산하여 산출한다.

나. 출결 점수는 학교생활기록부를 기초로 다음 산출식에 따라 산출한다.

출결 점수 산출식

$$\text{출결 점수} = 20 - (\text{결석일수} \times 0.2)$$

- 결석일수는 전 학년(全 學年)의 학년별 결석일수의 합
(단, 100일 이상 결석 시 100일로 간주)

결석일수 산정 기준

1. **학년별로 미인정 결석·지각·조퇴·결과 횟수를 합산하여 산출하되, 질병 및 기타 출석 인정의 사유로 인한 결석·지각·지각·조퇴·결과는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2. 학년별로 미인정 지각·조퇴·결과 3회는 미인정 결석일수 1일로 계산한다.
(2회 이하 버림)
※ 졸업예정자의 3학년 결석일수는 성적 산출 기준일까지로 함



다. 조기진급·조기졸업(예정)자는 다음 산출식에 따라 산출한 조정 결석일수를 출결 점수 산출식의 결석일수로 한다.

조정 결석일수 산출식

$$\text{조정 결석일수} = \text{실제 결석일수} \times \frac{3}{Y}$$

- Y는 실제 이수 학년수
- 조정 결석일수는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산출

4 중학교 성적 산출과 일람표 보관

가. 학교별로 학교생활기록부 마감 후 교육감은 본 지침에 따라 고입전형을 위한 중학교 성적을 일괄 산출한다.

나. 학교별로 졸업 후 5년간 [서식]중학교 성적 일람표를 별도 보관한다.

다. 성적 일람표는 이해 당사자가 공람할 수 있도록 한다.

라. 성적 산출 기준일은 2025. 11. 14.(금)이다.

5 중졸 검정고시 합격자의 중학교 성적 환산 방법

가. 중졸 검정고시 합격자는 검정고시 성적증명서를 기초로 다음 산출식에 따라 검정고시 성적을 중학교 성적으로 환산하여 산출한다.

검정고시 합격자의 중학교 성적 환산 산출식

$$\text{중학교 성적 환산 점수} = \left(1 - \frac{\text{60점 미만 과목수}}{\text{총 응시 과목수}}\right) \times 100$$

- 소수점 아래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아래 셋째 자리까지 산출

※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고교홍보사이트 [하이인포\(hinfo.sen.go.kr\)](http://hinfo.sen.go.kr),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성화고 입학·취업 [하이잡\(high-job.sen.go.kr\)](http://high-job.sen.go.kr)에서 “고입전형을 위한 중학교 성적 산출하기” 서비스 제공 예정(예시 참고)



[참고] 모집정원 대비 지원자 초과 시 「고입전형 명부」 동점자 우선순위

❖ 동점자 우선순위 ❖

(1순위) '교과학습'과 '출결상황' 적용 점수 중 '교과학습' 적용 점수가 높은 자

(2순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교과)의 중학교 교과 성취등급이 높은 자

※ 시행령 상 교과 순서*대로 순차 적용

*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및 외국어(영어)와 국가교육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

(3순위) 1, 2순위가 동점일 경우, 모두 합격



<예시> 고입전형을 위한 중학교 성적 산출하기 서비스 제공 내역(조회용)

▣ 졸업생, 다른 시·도 졸업(예정)자 및 조기진급·조기졸업(예정)자

2026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위한
중학교 성적 산출 내역

교과					출결			성적 점수 (A+B)	
총 이수 과목수				최하위 성취도 과목수	교과 점수 (A)	이수 학년수	결석 일수		출결 점수 (B)
2학년		3학년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 중졸 검정고시 합격자

2026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위한
중학교 성적 산출 내역

중졸 검정고시 응시 결과		성적 점수
총 응시 과목수	60점 미만 과목수	

**<별표 1> 교과 점수 조건표**

(단위: 점)

$$\text{교과 점수} = \left(1 - \frac{\text{②최하위 성취도 과목수}}{\text{①총 이수 과목수}} \right) \times 80$$

② \ ①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0	80.000	80.000	80.000	80.000	80.000	80.000	80.000	80.000	80.000	80.000	80.000	80.000	80.000	80.000	80.000
1	77.500	77.576	77.647	77.714	77.778	77.838	77.895	77.949	78.000	78.049	78.095	78.140	78.182	78.222	78.261
2	75.000	75.152	75.294	75.429	75.556	75.676	75.789	75.897	76.000	76.098	76.190	76.279	76.364	76.444	76.522
3	72.500	72.727	72.941	73.143	73.333	73.514	73.684	73.846	74.000	74.146	74.286	74.419	74.545	74.667	74.783
4	70.000	70.303	70.588	70.857	71.111	71.351	71.579	71.795	72.000	72.195	72.381	72.558	72.727	72.889	73.043
5	67.500	67.879	68.235	68.571	68.889	69.189	69.474	69.744	70.000	70.244	70.476	70.698	70.909	71.111	71.304
6	65.000	65.455	65.882	66.286	66.667	67.027	67.368	67.692	68.000	68.293	68.571	68.837	69.091	69.333	69.565
7	62.500	63.030	63.529	64.000	64.444	64.865	65.263	65.641	66.000	66.341	66.667	66.977	67.273	67.556	67.826
8	60.000	60.606	61.176	61.714	62.222	62.703	63.158	63.590	64.000	64.390	64.762	65.116	65.455	65.778	66.087
9	57.500	58.182	58.824	59.429	60.000	60.541	61.053	61.538	62.000	62.439	62.857	63.256	63.636	64.000	64.348
10	55.000	55.758	56.471	57.143	57.778	58.378	58.947	59.487	60.000	60.488	60.952	61.395	61.818	62.222	62.609
11	52.500	53.333	54.118	54.857	55.556	56.216	56.842	57.436	58.000	58.537	59.048	59.535	60.000	60.444	60.870
12	50.000	50.909	51.765	52.571	53.333	54.054	54.737	55.385	56.000	56.585	57.143	57.674	58.182	58.667	59.130
13	47.500	48.485	49.412	50.286	51.111	51.892	52.632	53.333	54.000	54.634	55.238	55.814	56.364	56.889	57.391
14	45.000	46.061	47.059	48.000	48.889	49.730	50.526	51.282	52.000	52.683	53.333	53.953	54.545	55.111	55.652
15	42.500	43.636	44.706	45.714	46.667	47.568	48.421	49.231	50.000	50.732	51.429	52.093	52.727	53.333	53.913
16	40.000	41.212	42.353	43.429	44.444	45.405	46.316	47.179	48.000	48.780	49.524	50.233	50.909	51.556	52.174
17	37.500	38.788	40.000	41.143	42.222	43.243	44.211	45.128	46.000	46.829	47.619	48.372	49.091	49.778	50.435
18	35.000	36.364	37.647	38.857	40.000	41.081	42.105	43.077	44.000	44.878	45.714	46.512	47.273	48.000	48.696
19	32.500	33.939	35.294	36.571	37.778	38.919	40.000	41.026	42.000	42.927	43.810	44.651	45.455	46.222	46.957
20	30.000	31.515	32.941	34.286	35.556	36.757	37.895	38.974	40.000	40.976	41.905	42.791	43.636	44.444	45.217
21	27.500	29.091	30.588	32.000	33.333	34.595	35.789	36.923	38.000	39.024	40.000	40.930	41.818	42.667	43.478
22	25.000	26.667	28.235	29.714	31.111	32.432	33.684	34.872	36.000	37.073	38.095	39.070	40.000	40.889	41.739
23	22.500	24.242	25.882	27.429	28.889	30.270	31.579	32.821	34.000	35.122	36.190	37.209	38.182	39.111	40.000
24	20.000	21.818	23.529	25.143	26.667	28.108	29.474	30.769	32.000	33.171	34.286	35.349	36.364	37.333	38.261
25	17.500	19.394	21.176	22.857	24.444	25.946	27.368	28.718	30.000	31.220	32.381	33.488	34.545	35.556	36.522
26	15.000	16.970	18.824	20.571	22.222	23.784	25.263	26.667	28.000	29.268	30.476	31.628	32.727	33.778	34.783
27	12.500	14.545	16.471	18.286	20.000	21.622	23.158	24.615	26.000	27.317	28.571	29.767	30.909	32.000	33.043
28	10.000	12.121	14.118	16.000	17.778	19.459	21.053	22.564	24.000	25.366	26.667	27.907	29.091	30.222	31.304
29	7.500	9.697	11.765	13.714	15.556	17.297	18.947	20.513	22.000	23.415	24.762	26.047	27.273	28.444	29.565
30	5.000	7.273	9.412	11.429	13.333	15.135	16.842	18.462	20.000	21.463	22.857	24.186	25.455	26.667	27.826
31	2.500	4.848	7.059	9.143	11.111	12.973	14.737	16.410	18.000	19.512	20.952	22.326	23.636	24.889	26.087
32	0.000	2.424	4.706	6.857	8.889	10.811	12.632	14.359	16.000	17.561	19.048	20.465	21.818	23.111	24.348
33		0.000	2.353	4.571	6.667	8.649	10.526	12.308	14.000	15.610	17.143	18.605	20.000	21.333	22.609
34			0.000	2.286	4.444	6.486	8.421	10.256	12.000	13.659	15.238	16.744	18.182	19.556	20.870
35				0.000	2.222	4.324	6.316	8.205	10.000	11.707	13.333	14.884	16.364	17.778	19.130
36					0.000	2.162	4.211	6.154	8.000	9.756	11.429	13.023	14.545	16.000	17.391
37						0.000	2.105	4.103	6.000	7.805	9.524	11.163	12.727	14.222	15.652
38							0.000	2.051	4.000	5.854	7.619	9.302	10.909	12.444	13.913
39								0.000	2.000	3.902	5.714	7.442	9.091	10.667	12.174
40									0.000	1.951	3.810	5.581	7.273	8.889	10.435
41										0.000	1.905	3.721	5.455	7.111	8.696
42											0.000	1.860	3.636	5.333	6.957
43												0.000	1.818	3.556	5.217
44													0.000	1.778	3.478
45														0.000	1.739
46															0.000

**<별표 2> 출결 점수 조건표**

(단위: 일, 점)

$$\text{출결 점수} = 20 - \text{결석일수} \times 0.2$$

결석일	출결 점수	결석일	출결 점수	결석일	출결 점수
0	20.0	34	13.2	68	6.4
1	19.8	35	13.0	69	6.2
2	19.6	36	12.8	70	6.0
3	19.4	37	12.6	71	5.8
4	19.2	38	12.4	72	5.6
5	19.0	39	12.2	73	5.4
6	18.8	40	12.0	74	5.2
7	18.6	41	11.8	75	5.0
8	18.4	42	11.6	76	4.8
9	18.2	43	11.4	77	4.6
10	18.0	44	11.2	78	4.4
11	17.8	45	11.0	79	4.2
12	17.6	46	10.8	80	4.0
13	17.4	47	10.6	81	3.8
14	17.2	48	10.4	82	3.6
15	17.0	49	10.2	83	3.4
16	16.8	50	10.0	84	3.2
17	16.6	51	9.8	85	3.0
18	16.4	52	9.6	86	2.8
19	16.2	53	9.4	87	2.6
20	16.0	54	9.2	88	2.4
21	15.8	55	9.0	89	2.2
22	15.6	56	8.8	90	2.0
23	15.4	57	8.6	91	1.8
24	15.2	58	8.4	92	1.6
25	15.0	59	8.2	93	1.4
26	14.8	60	8.0	94	1.2
27	14.6	61	7.8	95	1.0
28	14.4	62	7.6	96	0.8
29	14.2	63	7.4	97	0.6
30	14.0	64	7.2	98	0.4
31	13.8	65	7.0	99	0.2
32	13.6	66	6.8	100 이상	0.0
33	13.4	67	6.6		



붙임 4

과학고 자기주도학습전형 매뉴얼

창의미래교육과

1 과학고 '자기주도학습전형' 개관

가. 추진 배경

1) 창의적 과학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 마련

- 창의성을 갖춘 과학인재 발굴 필요성 및 중요성의 지속적 부각
- 과학고등학교를 통해 학생의 잠재능력을 계발하고 스스로 학습 및 연구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미래 창의적 과학 인재 양성

2) 과학고 설립목적에 부합하며,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방향으로 입학전형 개선

- 지식 위주 과학고등학교 입시로는 차세대 과학기술 인재에 필요한 창의성 및 인성 등에 대한 고려 미흡
- 창의성과 잠재력, 학습과정과 동기 등을 고려하는 입학전형으로 과학고등학교에 맞는 학생을 선발하고, 중학교 수학·과학교육의 내실화 도모

3) 과학고 입학전형 관련 사교육비 부담 경감

-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경시대회 준비 등 과학고등학교 입학전형으로 인한 과도한 사교육 유발 요인 배제
- 사교육에 의한 "스펙 쌓기"를 지양하고, 학생의 자기주도학습 역량 중심의 학생 선발 제도 확립

나. 과학고 '자기주도학습전형' 관련 개념

1) 자기주도학습 입학전형

- 학생의 자기주도학습 역량과 인성을 중심으로 창의성과 잠재력 등을 입학담당관들과 입학전형위원회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창의성과 잠재력 있는 학생을 선발

* **자기주도학습(Self-Directed Learning)**: 학생 주도적으로 목표를 설정·계획·학습 후 스스로 결과를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창의력과 문제해결력을 향상시키는 학습

2) 입학담당관

- 고등학교 입학전형 계획·시행·평가·자료검증 등 자기주도학습전형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고등학교 입학전형 전문가



3) 입학전형 실무위원(서류평가 및 면접평가 위원)

- 과학고 지원자의 서류 검증 및 면접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자기주도학습 역량을 평가하여 전형 단계별 대상자 및 최종 합격자 선정 과정에 참여하는 위원

4) 입학전형위원회

- 과학고 입학전형 전반의 계획·심의·결정에 참여하는 위원으로 구성
- 입학전형과정에서 주관적 판단과 편견을 배제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과학고 학교장(교감) 및 입학담당관, 교사, 외부 전문가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 입학전형과정에서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심층 논의와 토론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정

2 과학고 입학전형 주요 내용

가. 기본 원칙

1) 입학전형의 공정성·객관성 담보

- 전문연수, 학교별 워크숍 등을 통한 입학전형 관계자의 전문성 강화
- 친·인척 등 지원 학생과 관련이 있는 경우 입학전형과정에서 참여를 배제하는 기피제 적용
- 교육청 또는 외부기관의 전문가를 입학전형위원으로 위촉하여 공정성 담보

2) 과학고 설립목적과 특성에 부합하는 과학·수학에 대한 창의성과 인성을 겸비한 융합형 인재 선발

- 창의·인성 교육 강화를 위하여 인지능력 중심의 전형 방식에서 인성요소에 대한 평가 및 검증 강화
- 과학·수학 분야의 자기주도학습 역량과 인성을 겸비한 인재를 자기주도학습전형으로 선발
- 과학·수학에 대한 창의성, 잠재력, 자기주도학습 역량,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검증할 수 있는 방식의 평가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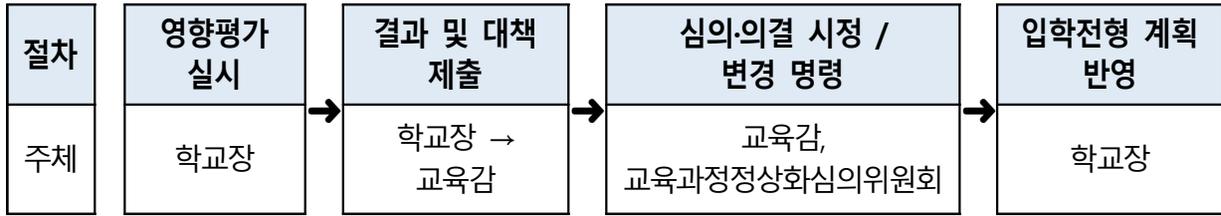
3) 사교육을 유발하는 입학전형 요소 배제

- 중학교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입학전형 금지
 -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
- 올림피아드(KMO 등), 교내외 각종대회와 각종 인증시험 및 자격증 등 선행학습 유발요소 배제
- 교과지식을 묻는 형태의 구술면접, 적성검사 등 변형된 형태의 필기고사 금지



4) 입학전형 사후관리 절차

<입학전형 영향평가 처리 절차>



- [학교장] 입학전형 이후 입학전형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 계획을 매년 2월 말까지 교육감에게 제출
- [교육감] 입학전형 영향평가 결과를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
⇒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입학전형 등 위반 시 과학고에 시정이나 변경 명령 요구
- [학교장] 교육감의 시정이나 변경 명령 반영 및 이행
※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불이행하고, 중대 위반사항인 경우 과학고의 재정지원 중단 또는 삭감, 학생정원 감축, 학급 또는 학과의 감축·폐지 또는 학생 모집 정지 조치 등을 할 수 있음(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3항)

5) 사회통합전형 선발

○ 입학정원의 20%를 사회통합전형 대상으로 선발

※ 관련 법령: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17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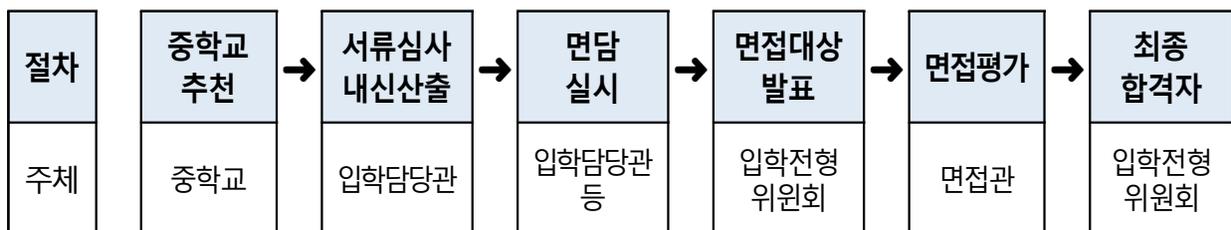
*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차상위 계층으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 그 밖에 교육 기회의 균등을 위하여 교육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사회통합전형의 모집 정원에 미달하는 학교의 장은 모집 정원에서 그 지원한 사람의 수를 뺀 인원의 50퍼센트의 범위에서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을 선발할 수 있음

나. 자기주도학습전형

1) 진행 절차





2) 단계별 주요사항

가) 중학교 추천

- 과학·수학 분야 등의 자기주도학습 역량과 인성 등을 겸비한 학생을 중학교 학교장이 추천
※ 필요시 과학교과 중학교별 추천 인원 및 자격을 중학교에 제시할 수 있음

나) 서류심사 및 내신 산출

- 전문성을 갖춘 입학담당관들의 충실한 검증이 가능한 기간 동안 활동
- 학교 설립 목적 및 학교별 인재상을 토대로 수립된 평가체제*(평가요소, 평가준거, 평가척도 등)를 활용하여 지원자의 제출서류 확인·검증
* 평가요소 및 평가척도, 지원자 특이사항 기재란 등으로 조직된 평가지에 검증 내용 요약, 기술
- 내신성적 산출은 성취평가제로 산출된 내신성적을 반영하되 반영 학기는 과학고등학교에서 3~5학기 범위 내에서 자율 결정
 - 내신 반영과목, 과목별 비중, 성적 산출방식은 교육청이 결정하되, 반영과목은 과학·수학으로 한정
 - 나이스 학교생활기록부Ⅱ(고입용)* 를 참고하여 성취도, 수강자만 반영
* 교과학습발달상황란에서 원점수, 과목평균, 표준편차 제외
 - 자유학기에 참여한 학생의 경우 당해 학기를 내신 성적 반영학기에서 제외하여 내신 성적 부담 완화

다) 면담 실시

- 지원자의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 추가 정보 수집 등을 위해 과학고등학교별로 면담 계획을 수립하여 면담 실시
※ 면담 내용 및 규모, 방식, 대상자 등은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교육청과 학교가 협의하여 결정
- 면담 시 지원자에 대한 자기소개서 및 교사추천서의 배제사항에 관한 질문 지양
※ 면담 시 언급된 자기소개서 및 교사추천서의 배제사항에 대한 부분은 평가에서 제외
- 올림피아드(KMO 등), 경시대회 수상실적, 영재교육원 교육 및 수료 여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직·간접적으로 확인하는 질문 지양
- 제출 서류 및 면담 결과에 대한 검증확인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평가를 위해 입학전형위원회에 추진
- 면담 내용
 - **(지원동기 및 진로계획)** 과학·수학 분야의 관심과 흥미, 과학고 지원 동기,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한 활동 계획과 진로 계획
 - **(자기주도학습 과정)** 학습을 위해 주도적으로 수행한 목표설정·계획·학습을 통한 결과 및 평가 전 과정과 내용 등(진로체험, 자유학기제 기간 동안의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한 활동 및 경험 등 포함)



- (탐구·체험 활동) 탐구(과학·수학) 및 체험 활동에 따른 독자적 성장과 성숙한 가치관
 - (독서활동) 과학·수학, 진로, 교양 관련 독서 결과 및 활동에 따른 지적 성장과 성숙한 가치관
 - (핵심인성요소 관련 활동) 자기소개서, 학교생활기록부, 교사추천서에 기재된 핵심인성요소* 관련 주도적 활동 및 자아성장
- * 핵심인성요소: 봉사·체험활동을 포함한 배려, 나눔, 협력, 타인 존중, 규칙준수 등 학생의 인성을 나타낼 수 있는 다양한 요소를 의미

라) 면접대상자 발표

- 입학담당관으로부터 추인된 제출 결과를 입학전형위원회가 종합 평가하여 면접 대상자 발표
- 면접대상자는 모집정원의 2배수 범위 이내로 발표

마) 면접 평가

- 과학·수학 등에 대한 창의성, 잠재력, 소양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 검증할 수 있도록 과학·수학 영역 등을 통합하여 면접평가 실시

(1) 질문지 개발

- 면접을 위한 질문지는 응시자의 **창의성, 인성, 잠재력 등을 측정할 수 있으며**, 중학교 교육과정에 기초하여 수학·과학의 기본 개념에 기반한 창의성, 인성, 잠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열린 문항 형태의 질문지 권장
- 올림피아드(KMO 등), 경시대회 수상실적, 영재교육원 교육 및 수료 여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직·간접적으로 확인하는 질문지 개발 지양
- 응시자 간 공정성과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질문지의 난이도 조절 권장
- 중학교 교육과정에 충실하고 수학·과학의 기본 개념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열린 문항 형태의 질문지를 개발
- **질문지 검토진**을 구성하여 개발된 질문지에 대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위반 여부를 확인·검증하는 절차와 관련 서류를 마련하여 실행

* 질문지 검토진: 질문지를 검토하여 중학교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이 준수되었는지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자로 구성

** 제9조제1항 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

※ 과학고등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교육청과 과학고등학교가 협의하여 결정

<절차 예시>



- **질문지 및 면접 평가 체제는 평가일 이전에 외부 유출 방지를 위한 관계자 격리수용**



(2) 면접평가 실시

- 면접관은 관련 연수(30시간)를 이수한 자로 면접실 당 3인* 이상 배치
 - * 교육청과 과학고등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교과목 교사, 외부인사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
- 면접관은 준비된 질문지에 따라 면접을 실시하여 신뢰도·객관성 유지
- 올림피아드(KMO 등), 각종 경시대회, 영재교육원 교육 및 수료,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 제출서류 내용과 무관한 질문 금지
 -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3항
- 교과 지식만을 묻는 변형된 형태의 질문 금지
- 추가 질문은 사전에 준비한 질문으로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의 횟수로 간략하게 실시
- 질문에 대한 지원자의 답변 기회를 동일하게 제공하여 공정성 유지
- 면접관별로 개별 점수를 산정하고, 합의제 형식으로 의논하는 방식으로 평가하지 않도록 주의
- 제출 서류의 내용 외에 평가 내용과 관련 없는 요인(외모, 말투, 차림새)등이 평가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유의
- 면접관은 개인별 평가표에 수정 가능한 연필기록, 중복체크, 추후 서명 또는 날인 등의 방식으로, 평가 후 평가표를 수정하지 않도록 주의

(3) 면접 절차의 객관성 및 공정성 제고

- 면접관 연수(30시간)를 통해 면접평가자에 대한 전문성 제고
- 면접관들이 학교 간 비교 평가를 하거나 지원자 복장(교복, 고가의 옷)으로 신상을 확인할 여지 등을 사전에 방지
- 면접 당일 교육청 관계자의 과학고등학교 방문을 통한 면접실 참관* 및 면접 운영 상황 모니터링 실시
 - * 면접실 참관은 입학전형위원장과 협의하여 참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바) 최종합격자 발표

- 내신성적, 서류평가 및 면접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최종 합격자 선발
- 내신성적, 서류평가 결과, 면접결과의 반영 방법 등에 대한 산정 방법 및 반영 비율은 과학고별로 결정하며, 각각의 결과를 종합하여 입학전형위원회에서 최종합격자를 선정·확정함



3 과학고 입학전형위원회

가. 입학전형위원회 구성

- 입학전형 관련 **연수이수자***로 구성하며, **학교장을 위원장**으로 입학담당관 (전임 및 위촉 담당관) 및 입학전형위원 등 **15인 이내**로 구성

* 학교장: 30시간 / 입학담당관: 60시간

○ 위원 구성 권장 사항

- 교육청의 **업무담당 장학사(관)**를 **당연직**으로 위촉

* 과학고등학교 업무, 입학전형 업무 등

* 담당 장학사(관) 변경 시 이전 담당자를 해촉 후 현 담당자 재위촉

- 과학과 수학에 전문성을 지닌 **외부 인사**를 **1인 이상** 위촉

기 관	위촉 대상
고등학교	교장, 교감, 수석교사, 교사 및 퇴임 교원
대학교 및 연구기관	교수, 입학사정관, 연구원 등
교육청	장학관, 장학사 등

- 과학고등학교 졸업생(필요 시)

나. 입학전형위원회의 역할

- 과학고 입학전형 요강 심의·결정
 - 중학교별 추천인원 및 자격, 면접 방법, 내신성적 반영, 면접결과 반영 등
- 과학고 최종 합격자 선정 등 입학전형 운영상의 주요 사항 결정
- 과학고등학교 입학전형 운영 전반에 대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위반 여부 심의

다. 입학전형위원 연수 필수 이수

- 입학전형 관련 연수이수 경력이 없는 위원들은 해당 연수를 필히 이수해야 함
 - ※ 학교별로 입학업무 담당자(입학담당관, 면접관, 입학전형위원)의 전문성을 충분히 제고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연수 추진 (교육청 업무담당자는 해당없음)

**< 과학고등학교 입학전형 신규자 연수 시간 >**

대상자	연수명(예시)	연수시간	비고
학교장	입학전형연수	30시간	입학전형위원(당연직), 카이스트 연수(15시간) 포함
입학담당관(부장)	입학담당관 연수	60시간	입학전형위원(당연직) 입학전형 운영 총괄 출석면담에서 학생 면담 실시
면접관	면접관 실무 연수	30시간	소집면접의 면접관
상근 입학담당관	입학담당관 연수	60시간	입학전형실무총괄 입학전형위원회서기 출석면담에서 학생면담 실시
비상근 입학담당관	입학전형연수	30시간	출석면담에서 학생 면담 실시
입학전형위원	입학전형 실무연수	15시간	학교장, 입학부장을 제외한 입학전형위원회의 위원

4 제출 서류**가. 자기소개서**

◆ 자기주도학습 영역(꿈과 끼 영역)과 **인성영역을 통합하여 3,000자 범위 내에서 작성**

1) 주요 내용

- **(지원동기 및 진로계획)** 학교특성과 연계해 지원학교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한 활동 계획과 진로 계획
- **(자기주도학습 과정)** 학습을 위해 주도적으로 수행한 목표 설정·계획·학습을 통한 결과 및 평가까지의 전 과정과 내용(자유학기제 기간 동안의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한 활동 및 경험 포함)
- **(탐구·체험)** 과학적(과학·수학) 탐구활동 결과와 활동에 따른 성장, 변화
- **(독서활동)** 과학·수학, 진로, 교양 관련 독서 결과 및 활동에 따른 성장, 변화
- **(핵심인성요소 관련활동)** 배려, 나눔, 협력, 타인존중, 규칙준수 등의 관련된 활동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



2) 작성 방법

- 자기소개서는 자기주도학습 영역(꿈과 끼 영역)과 인성 영역 평가가 가능하도록 학생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파일 제출 가능)
 - ※ 학교 등 특정 장소에서 지원자를 소집하여 자기소개서 작성 금지
 - ※ 대리 작성, 허위작성 혹은 표절 시에는 사후에도 입학 취소 등 불이익 부과
- 본문에 수학 등 교과와 관련된 각종 인증시험(점수), 올림피아드(KMO 등)·경시대회 등 사교육을 유발할 수 있는 실적 기재 시 해당 영역 최하등급 처리
- 부모 및 친인척의 사회·경제적 지위 내용 등 기재 시 학교별 기준을 마련하여 최저 등급자의 등급을 기준으로 평가등급을 한 단계 이상 강등 처리
 - ※ 최저 등급자의 등급이 최하등급인 경우는 최하등급으로 처리

자기소개서 작성 시 배제 사항

- 올림피아드(KMO 등), 교내·외 각종 경시대회 등 입상 실적, 영재교육원 교육 및 수료 여부 등
- 부모 및 친인척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암시하는 내용
예) 부모 및 친인척의 구체적인 직장명이나 직위, 소득수준, 고비용 취미 활동(골프, 승마 등), 학교에서 주관하지 않은 모듬 및 프로젝트 활동(시설 학원 및 기관에서 추진하는 교과 관련 활동) 등
- TOEFL·TOEIC·TEPS·TESL·TOSEL·PELT·HSK·JLPT 등 각종 어학인증시험 점수, 한국어(국어)·한자 등 능력시험 점수
- 지원자 본인을 알 수 있는 이름, 출신중학교 등 인적사항을 암시하는 내용

* 잘못된 자기소개서의 작성 예시

- 중2 겨울방학 중 000에서 주최하는 0000 경시대회에 참가해 2위 입상이라는 쾌거를 올렸습니다.
- 어렸을 적부터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해서 수학인증시험에서 최고 수준에 도달하였고, 전국 단위의 대회에 출전하여 매우 우수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 00대학 물리학 교수이신 아버지를 따라 어렸을 때부터 물리학자의 꿈을 키웠습니다.
-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TOEIC 시험에 응시해 450점을 받았습니다. 이후 영어공부에 매진한 결과 850점을 얻으며 “노력은 결과를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나. 교사 추천서

◆ 자기주도학습과정 및 진로계획 평가와 인성영역 평가를 통합하여 1000자 범위 내에서 작성

1) 추천 방법

- 교과(과학, 수학) 담당 교사 중 1인이 추천 여부를 판단하여 작성
 - 학생의 자기소개서 및 학교생활기록부를 기초로 평가 및 의견 기술



○ 배제 영역이 포함되었는지 반드시 확인

※ 원서접수를 받은 학교에서는 전형 이전에 교사추천서를 반드시 확인하여 배제 영역이 포함된 경우 해당중학교에 다시 작성하도록 통보(해당 중학교에서 불응하는 경우 당해 학생은 전형 대상에서 배제)

○ 작성한 추천서는 추천교사가 **입학전형 지원 관련** 시스템에서 직접 입력 제출

2) 주요 내용

○ **(전공 및 진로)** 학생의 전공의지 및 진로계획이 추천할 과학고 설립취지, 교육과정 등과 부합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작성

○ **(학습 과정)** 학생의 학습 과정이 자기 주도적으로 이루어졌는지의 여부와 평소 학습 태도 및 과학·수학 분야 열정과 동기에 대한 의견 작성

○ **(인성 영역)** 학생의 대인관계, 소통능력, 리더십 등의 인성 부문과 학습과정 및 생활상의 창의성에 대한 의견 작성

※ 인성영역은 담임교사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작성

◆ 학교장추천서의 전형자료 활용은 학교에서 자율 결정

◆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등 기타 양식들도 교육청 및 학교에서 필요한 내용을 추가하거나,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여 변경 사용 가능

○ 다음 영역을 포함하는 항목은 배제

배제 영역

- 올림피아드(KMO 등), 교내·외 각종 경시대회 입상 실적, 영재교육원 교육 및 수료 여부 등
- 부모 및 친인척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암시하는 내용
- 학생의 교과 성적, TOEFL·TOEIC·TEPS·TESL·TOSEL·PELT·HSK·JLPT 등 각종 어학인증시험 점수, 한국어(국어)·한자 등 능력시험 점수
- 지원자 본인을 알 수 있는 이름, 출신중학교 등 인적사항을 암시하는 내용
- 기타 사교육이 유발될 수 있거나 입학전형에 불필요한 내용

다. 기타 서류

1) (입학 원서) 교육청 및 과학고등학교가 지정한 양식

2) (학생생활기록부) 학생생활기록부Ⅱ(상급학교 제출용)



 붙임 5

외국어고·국제고 자기주도학습전형 매뉴얼

중등교육과

1 전형 개요

- 가. 학생의 자기주도학습 결과와 인성을 중심으로 고등학교 입학전형위원회에서 창의적이고 잠재력 있는 학생을 선발하는 자기주도학습전형을 실시함
- 나. 자기소개서, 학교생활기록부를 전형요소로 하여 학생의 자기주도학습능력 및 핵심인성요소를 평가함
- 자기소개서 작성 시 각종 인증시험 점수, 교과목의 점수나 석차, 교내·외 각종 대회 입상실적, 자격증, 영재교육원 교육 및 수료 여부 등 기재 시 0점 처리, 부모 및 친인척의 사회·경제적 지위 암시 내용, 지원자 본인의 인적 사항을 암시하는 내용 등 기재 시 항목 배점의 10% 이상 감점 처리
 - “유사도 검증 시스템”을 활용하여 자기소개서의 표절여부 검증 의무화
- 다. 입학전형위원회에서 서류와 면접을 활용하여 학생을 선발함
- 면접전형위원 면접조 구성: 학교 위촉 면접전형위원 2인 이상(교내교사 또는 외부위원 1인 이상), 교육청 위촉 면접전형위원 1인 이상

※ 입학전형위원회 구성

(입학전형위원) 입학전형요강 심의, 계획 수립·공고 등 입학전형업무를 총괄하는 입학전형위원회의 위원

(면접전형위원) 보수(신규) 연수를 이수한 면접 평가를 담당하는 위원
(단, 면접전형위원은 다른 전형위원을 겸임할 수 없음)

(전형관리위원) 입학전형의 실무를 담당하는 위원

- 라. 사교육을 유발하는 입학전형 요소 배제
- 중학교 교육과정 수준을 벗어난 입학전형 금지
 - 학교별 필기고사 금지 및 교과지식 측정을 목적으로 한 전형 금지
 - ※ 교과지식을 묻는 형태의 구술면접·적성검사, 외국어 면접·토론, 외국어 동영상 활용, 중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제2외국어 활용 능력에 대한 질문 등
- 마. 외국어고는 학과별로 전형 실시



바. 전체 모집 정원의 20%를 사회통합전형으로 선발함

※ 관련 법령: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17조

***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으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 그 밖에 교육기회의 균등을 위하여 교육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단, 서울국제고등학교(공립)는 2026학년도 신입생 선발 시 전체 모집 정원의 40%를 사회통합전형으로 선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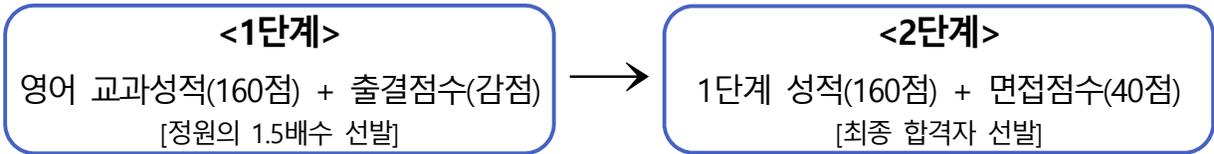
※ 사회통합전형 지원자 수가 해당 전형 모집 정원에 미달인 경우, 학교의 장은 해당 전형 모집 정원에서 그 지원자 수를 뺀 인원의 50퍼센트의 범위에서 일반전형으로 선발할 수 있음

2 지원 방법

- 가. 모집단위는 서울특별시로 하되, 외국어고 모집단위에는 외국어고가 없는 시·도가 포함되고, 국제고 모집단위에는 국제고가 없는 시·도가 포함됨
- 나.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학교별 전형요강에 따라 지원함(해당 고등학교 홈페이지 참조)
- 다.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학교생활기록부, 기타 제출서류를 해당 고등학교에 직접 개별 제출함

3 선발(전형) 방법

가. 전형절차 및 방법(자기주도학습전형)



나. <<1단계>> '영어 교과성적(160점) + 출결점수(감점)'로 선발

○ 영어 교과성적은 중학교 2, 3학년(4개 학기)의 원점수, 과목평균(표준편차)을 제외한 성취도를 성적 산출 기준표 <표1>에 의거, 점수화하여 반영한다

<표1> 성적 산출 기준표

성취도	A	B	C	D	E
점수	40점	36점	32점	28점	24점

※ 자유학기제가 포함된 학기의 경우, 성적 산출시 자유학기제 미운영 학기의 성적으로 대체하여 활용함
(예: 2학년 1학기에서 자유학기제를 이수한 경우 2학년 1학기 성적을 2학년 2학기 성적으로 대체)

※ 중학교 졸업자 가운데 2학년 또는 3학년 성취도 수준이 없을 경우 수, 우, 미, 양, 가를 활용하여 수는 A, 우는 B, 미는 C, 양은 D, 가는 E로 성취도 수준을 부여함



○ 출결 점수 산출 방식

출결 점수 = - (미인정 결석 일수 × 가중치*)
 ※ 미인정 지각·조퇴·결과를 합하여 3회는 미인정 결석 1회로 간주
 * 학교별 전형요강에 따름

○ 1단계 동점자 발생 시 처리 기준: 2026학년도 학교별 전형요강 참조

다. <<2단계>> '1단계 성적(160점) + 면접점수(40점)'으로 선발

○ 면접점수 산출 방식

면접점수 = 자기주도학습 영역 점수(꿈과 끼 영역) + 인성 영역 점수

○ 면접 내용

- 자기주도학습 영역(꿈과 끼 영역)
 - 자기주도학습과정: 학습을 위해 주도적으로 수행한 목표설정·계획·학습을 통한 결과 및 평가까지의 전 과정(교육과정에서 진로체험 및 동아리 활동,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한 활동 및 경험 등 포함)
 - 지원동기 및 진로계획: 학교특성과 연계해 지원학교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한 활동 계획과 진로 계획
 - 인성 영역
 - 핵심인성요소에 대한 중학교 활동 실적: 자기소개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핵심인성요소에 대한 중학교 활동 실적
 - 인성영역 활동을 통해 느낀 점: 중학교 활동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
- ※ 면접 시 교과학습발달상황을 포함한 교과 관련 영역에 대한 평가를 금지함

4

제출 서류

가. 자기소개서

○ 자기소개서 주요 항목

- 자기주도학습 영역(꿈과 끼 영역): 자기주도학습 과정, 지원동기 및 진로계획
- 인성 영역: 핵심인성요소에 대한 중학교 활동 실적 및 이를 통해 배우고 느낀 점 등

핵심인성요소란?

■ 핵심인성요소는 봉사·체험활동을 포함한 배려, 나눔, 협력, 타인 존중, 규칙준수 등 학생의 인성을 나타낼 수 있는 다양한 요소를 의미



○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

- 자기주도학습 영역(꿈과 끼 영역)과 인성 영역의 내용을 포함하여 1,500자(띄어쓰기 제외) 이내로 본인이 직접 작성
 - ※ 학교 등 특정장소에 지원자를 소집하여 자기소개서 작성 금지
 - ※ 대리 작성, 허위작성 혹은 표절 시에는 사후에도 입학 취소 등 불이익 부과
- 본문에 영어 등 각종 인증시험 점수, 교과목의 점수석차, 교내·외 각종 대회 입상실적, 자격증, 영재교육원 교육 및 수료 여부 등 기재 시 0점 처리, 부모 및 친인척의 사회·경제적 지위 암시 내용, 지원자 본인의 인적 사항을 암시하는 내용 등 기재 시 학교별 기준을 마련하여 항목 배점의 10% 이상 감점 처리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에서 사교육 유발요인이 큰 사항으로 규정한 내용은 자기소개서에 작성을 금하며, 면접 전형 등에도 관련 내용을 질문할 수 없음

자기소개서 작성 시 배제 사항

1. 각종 공인어학시험 참여 사실과 그 성적 및 수상 실적

【기재불가 공인어학 시험】
 영어(TOEIC, TOEFL, TEPS), 중국어(HSK), 일본어(JPT, JLPT), 프랑스어(DELF, DALF), 독일어(ZD, TESTDAF, DSH, DSD), 러시아어(TORFL), 스페인어(DELE), 상공회의소한자시험, 한자능력검정, 실용한자, 한자급수 자격검정, YBM 상무한검, 한자급수인증시험, 한자자격검정 등

2. 교과·비교과 관련 교외대회 참여 사실과 그 성적 및 수상 실적
3. 교외 기관·단체(장)등에게 수상한 교외상(표창장, 감사장, 공로상 등도 기재 불가함)
4. 교내·외 인증시험 참여 사실이나 그 성적
5. 논문을 학회지 등에 투고 또는 등재하거나 학회 등에서 발표한 사실
6. 도서출간 사실
7.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출원 또는 등록 사실
8. 어학연수, 봉사활동 등 해외 활동실적 및 관련 내용*

* 다만, 특례입학대상자 또는 중학교 해당 기간의 2년 이상을 해외에서 거주한 검정고시생·외국인의 경우 해외 교육기관의 교육경험 포함 가능(대회참여·수상실적은 제외)

9. 부모(친인척 포함)의 사회·경제적 지위 암시 내용

예) 부모 및 친인척의 구체적인 직장명이나 직위, 소득수준, 고비용 취미 활동(골프, 승마 등), 학교에서 주관하지 않은 모듬 및 프로젝트 활동(사설 학원 및 기관에서 추진하는 교과 관련 활동) 등

10. 장학생·장학금 관련 내용

11. 구체적인 특정 대학명, 기관명(기구, 단체, 조직 등 포함), 상호명, 강사명 등

1) 기관명

- 교육관련기관(교육부 및 소속기관, 시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에 한함)의 경우 기관명을 입력할 수 있음
- * 교육부 소속기관: 대한민국학술원, 국사편찬위원회, 국립국제교육원, 국립특수교육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총 6개 기관)
- ** 시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의 [참고자료] 참조
- ※ 교육관련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기구, 단체, 조직 등 포함
- 봉사활동 실적의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에는 구체적인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을 입력함



2) 강사명

- 특정 강사명은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 모두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참여한 강의 (또는 교육활동)의 강사를 말함

12. 교내대회 참여사실과 그 성적 및 수상실적
13. 자격증 명칭 및 취득 사실
14. 교과목의 점수나 석차
15. 영재교육원 교육 및 수수료 여부
16. 지원자 본인을 알 수 있는 이름, 출신중학교 등 인적사항을 암시하는 내용

* 잘못된 자기소개서의 작성 사례

-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TOEIC 시험에 응시해 450점을 받았습니다. 이후 영어공부에 매진한 결과 850점을 얻으며 "노력은 결과를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 영어 성적이 100점이 되어 전교 1등이 되었습니다.
- 중2 겨울방학 중 ○○○에서 주최하는 ○○○ 경시대회에 참가해 2위 입상이라는 쾌거를 올렸습니다.
- 어렸을 적부터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영어인증시험에서 최고 수준에 도달하였고, 전국 단위의 대회에 출전하여 매우 우수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 ○○지검 검사장이신 아버지를 따라 어렸을 때부터 법조인의 꿈을 키웠습니다.
- ○○방송반에서 동아리 활동을 했습니다.(출신 중학교명을 암시하는 경우)

나. 학교생활기록부

- 수상경력은 제외하고, 교과학습발달상황은 영어, 국어, 사회(없을 경우 역사) 과목의 원점수, 과목평균(표준편차)를 제외하고 성취도(수강자수)만 출력
- 교과학습발달상황 중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제외하고 출력
- 중학교 3학년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출력 시 제외
 - ※ 원서접수 이전에 학교생활기록부 제출을 요구하는 행위는 금지함
 - ※ NEIS 출력물 공통양식(학교명/일시/IP주소/출력자명) 정보 비공개
 - ※ 2026학년도 자기주도학습전형 및 고등학교 입학전형영향평가 매뉴얼(한국교육개발원) 등에 따라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붙임 6

서울체육고 입학전형 매뉴얼

체육건강예술교육과

1 모집 종목

육상(단거리, 중장거리, 도약, 투척), 수영(경영, 핀, 수구, 다이빙), 태권도, 유도, 복싱, 레슬링, 사격(공기소총, 공기권총), 양궁, 배드민턴, 체조, 역도, 자전거, 조정, 근대5종, 펜싱(플러레, 에페, 사브르)

2 지원 방법

전국 중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중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 가. 입상실적 소지자(각종전국대회 및 시도 규모 대회 입상자)
- 나. 해당 종목에 운동 소질이 있는 자

3 선발(전형) 방법

가. 선발 방법

- 1) 특별전형: 경기입상실적 4등급 이내(등급 기준표 참조)
 - 가) 입상실적: 전국규모대회 개인 1, 2, 3위 입상실적(140점)
 - 나) 내신성적: 교과성적(60점), 출결(20점)
- 2) 일반전형: 경기입상실적 소지자 또는 해당 종목에 운동 소질이 있는 자
 - 가) 실기고사: 전문기능평가(140점), 체력평가(80점)
 - 나) 체격 및 종목 적성평가(20점)
 - 다) 내신성적: 교과성적(60점), 출결(20점)

나. 선발 기준

1) 특별전형

구분	입상실적	내신성적			출결	계
		교과성적				
		국어	영어	수학		
배점	140점	20점	20점	20점	20점	220점

- 서류전형(입상실적, 내신성적)으로만 선발함



2) 특별전형 등급 기준표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140점	126점	112점	98점
경기입상실적	2025년	전국개인 1위	전국개인 2위	전국개인 3위	
	2024년		전국개인 1위	전국개인 2위	전국개인 3위
	2023년			전국개인 1위	전국개인 2위

※ 육상(전종목), 수영(경영), 양궁, 사격은 별도 세부 등급 기준표 참조(서울체육고등학교 홈페이지)

3) 일반전형

구분	실기고사			내신성적			출결	계
	전문기능평가 (경기입상실적)	체력 평가	체격 및 종목 적성평가	교과성적				
				국어	영어	수학		
배점	140점	80점	20점	20점	20점	20점	20점	320점

※ 경기입상실적자는 전문기능평가를 경기실적으로 대체할 수 있음(서울체육고등학교 홈페이지)

다. 특기사항(일반전형)

- 1) 종목을 선택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 2) 경기입상실적이 없는 학생도 지원할 수 있다.
- 3) 경기입상실적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경기입상실적이 있는 종목과 상이한 종목을 선택하여 지원할 경우 해당 종목 전문기능평가를 받아야 한다.

라. 내신성적 산출 방법

- 1) 교과성적
 - 졸업예정자는 3학년 1학기 교과 성적 중 3과목(국어·영어·수학)의 과목별 성취도를 교과성적 산출 기준표 <표 1>에 의거 점수화하여 반영한다.

<표 1> 교과성적 산출 기준표

과목	성취도				
	A	B	C	D	E
국어	20점	19점	18점	16점	13점
영어	20점	19점	18점	16점	13점
수학	20점	19점	18점	16점	13점

2) 출결사항(20점)(2025년 9월 30일 기준) <표 2>

- 전 학년(3개 학년) 미인정 결석 일수를 산출하여 출석 점수를 적용하고 미인정 지각·조퇴·결과는 전 학년(3개 학년) 합산하여 3회를 결석 1회로 하며(2회 이하는 버림), 기타 및 질병으로 인한 결석·지각·조퇴·결과는 결석일수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표 2> 출결사항 점수 산출 기준표

등 급	1	2	3	4	5	6	7	8
결석일수	0일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이상
점 수	20	19	18	17	16	15	14	13

3) 졸업자 및 검정고시 출신자 내신성적 산출 기준은 별도의 계획으로 규정한다.



마. 합격자 선발

1) **특별전형: 종목별 모집 정원 이내에서 총점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한다.**

단, 수영(경영)은 세부종목별 모집 인원으로 선발함

2) **일반전형: 종목별 모집 정원 잔여 인원을 총점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한다.**

바. 정원 외 선발(특례입학자·보훈자 자녀 등): 일반지원자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특별전형 우선 선발 후 잔여 인원은 일반전형으로 선발하며, 실기고사에 합격한 경우에만 선발한다.

사. 동점자 처리 기준

1) 특별전형

- 제 1순위: 입상실적 점수 우수자
- 제 2순위: 전국소년체육대회 1, 2, 3위 다수자
- 제 3순위: 전국규모대회 1위 다수자
- 제 4순위: 전국규모대회 2위 다수자
- 제 5순위: 전국규모대회 3위 다수자
- 제 6순위: 내신성적 점수 우수자

2) 일반전형

- 제 1순위: 전문기능평가 점수 고득점자
- 제 2순위: 종목별 체력평가 점수 고득점자
- 제 3순위: 내신성적 점수 우수자

아. 합격 배제 조건

- 1) 실기고사 성적 60% 미만인 자
※ 경기입상실적 소지자 및 특례입학자와 국가유공자녀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2) 실기고사 미응시자
- 3) 자기소개서 및 진로계획서 미제출자
- 4) 부정입학자(대리시험, 경기입상실적 위조, 내신성적 위조 등)
- 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가해학생 조치 8호(전학) 처분을 받은 자
※ 2022. 3. 1. 이후 조치 결정된 사항만 적용
- 6) 기타 선발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결격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 자
(신체적·정신적으로 운동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된 자 등)



4 제출 서류

- 가. 입학 원서 1부
- 나.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
- 다. 해당 경기단체 발행 경기입상실적증명서 1부(원본대조필) ※ 해당자에 한함
- 라. 자기소개서 및 진로계획서 1부(해당서식 반드시 제출)
- 마.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증 사본 1부
- 바. 국가유공자녀는 교육보호대상자 확인서(국가보훈부 발행), 특례입학지원자는
고입면제대상자 확인서(교육청 발행) 1부
- 사. 신체검사서(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1부
- 아.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



붙임 7

산업수요맞춤형고(마이스터고) 입학전형 매뉴얼

진로직업교육과

1 산업수요맞춤형고 육성 기본계획(2008.7.7.)에 따른 학생 선발기준

- 학생모집: 입학전형 다양화·자율화
- 소질, 적성검사, 중학교 추천, 자격증, 입상경력 등 성장가능성
 - 학교장이 전국단위로 모집(특차모집)
- ※ 전국단위 모집 비율은 학교장이 교육감과 협의·결정

2 입학전형 기준 총괄표

구분	필수 평가요소			선택 평가요소	전형 비율
	교과성적	인성	면접	학교선택	
특별 전형	30% 이하	10% 이상	10% 이상	0 ~ 20%	모집정원 10% 이상
일반 전형	50% 이하	10% 이상	10% 이상	0 ~ 20%	모집정원 90% 이하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교과 반영 • 교과가중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 여부, 비율 : 학교재량 - 기술·가정은 필수 포함하여 3개 교과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수적용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결, 봉사 • 선택적용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창의적 체험활동 등 인성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장가능성, 적성 등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여부: 학교재량 • 가산점영역 내용 (총점의 3% 이내) 	

3 입학전형 기준 세부 내용

가. 교과성적 반영 기준

- ▶ 일반전형: **50% 이하**로 반영
- ▶ 특별전형: **30% 이하**로 반영
- ▶ 과목 가중치 적용 여부 및 반영비율은 학교 재량으로 결정하되, 반영 시 3개 교과 이하로 적용 (단, 3개 교과 중 기술·가정 교과는 필수 포함)



- 산업수요맞춤형고(마이스터고)별 성적산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성적 산출·반영
- 전교과 성적 반영을 원칙으로 함
- 과목 가중치는 학교재량으로 반영여부를 판단하고, 반영 시에는 교과성적 비율 내에서 3개 교과 이하를 반영
(단, 가중치 반영 교과에는 기술·가정 과목을 반드시 포함)

나. 인성(비교과) 요소 반영 기준

- ▶ 필수 반영 요소: 출결, 봉사활동
 - ※ 실적 반영 기간은 학교, 교육청 협의 결정
- ▶ 선택 반영 요소: 학교 재량 선택(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창의적체험활동 등)

다. 면접 요소 반영 기준

- ▶ 일반전형, 특별전형: 총점의 **10% 이상** 반드시 반영
- ▶ 학생의 적성, 진학동기, 향후 진로 계획 등 '**성장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요소 반영

- 면접전형 영역 및 문항풀을 공동 개발·공유하고, 일부는 학교 자체 개발 적용 가능
- ※ 산업수요맞춤형고 신입생 면접 시, 객관성, 신뢰성, 타당성 등이 반영될 수 있는 평가 척도 적용

라. 학교 선택 요소 반영 기준

- ▶ 학생 소질, 적성 등을 반영할 수 있는 학교 선택 요소 반영
- ▶ 반영 비율 및 적용 여부: 학교 재량(0~20%)
- ▶ 가산점 영역(자격증, 수상실적, 리더십(회장/부회장), 캠프 참가 등)은 학교 선택으로 적용하되, 영역 합계가 총점의 **3% 이내로 제한**

마. 사회통합전형

- ▶ 사회통합전형: 전체 모집 정원의 10% 이내 선발
 - ※ 사회통합전형 계획에 의거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보훈대상자, 보호대상 아동¹⁾ 등
 - ** 보호대상 아동 포함여부는 학교재량임

바. 해당학교 교육과정 운영이나 학업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 될 경우 신입생 전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함

사. 특별정원 모집 정원 미달 시 일반전형에서 충원할 수 있음

1) 보호대상 아동: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



붙임 8

특성화고 입학전형 매뉴얼

진로직업교육과

1 지원 자격

가. 공통 및 일반 전형

- 1) 중학교 졸업예정자
- 2) 중학교 졸업자 또는 중학교 졸업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원서 접수일 현재 전 가족이 모집 지역에 거주하는 자

나. 특별 전형

- 1) 미래인재 특별전형: 취업·창업의지가 명확하고 성장 가능성, 창의성을 가진 학생으로 지원학과의 소질과 적성, 학생의 특기, 잠재능력을 종합하여 교과성적과 관계없이 선발
- 2) 학교장 특별전형: 학교별 전형요강에 따름

2 제출 서류

가. 공통 서류: 입학원서

- 1) 방법
 - 가) 서울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 출신 중학교에서 작성 제출
 - 나) 다른 시도 중학교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 검정고시 합격자 등: 해당 특성화고등학교에 직접 작성 제출
- 2) 추가 서류: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증명서**와 **성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제출

※ 미래인재 특별전형 지원자는 성적증명서 제출 제외

나. 특별 전형

- 1) 미래인재 특별전형: 학교생활기록부Ⅱ(교과성적 및 수상경력 제외)
- 2) 학교장 특별전형: 학교별 전형요강에 따름



3 전형 방법

가. 일반 전형

- 1) 교육감이 일괄 산출한 절대평가 방식의 중학교 성적을 기준으로 선발한다.
※ 모집정원 대비 지원자 초과 시 동점자 우선순위는 학교별 전형 요강에 따름
- 2) 해당 학교에 설치된 학과 중 학교별 입학전형 요강에 따라 학과를 지망할 수 있다.

나. 특별 전형

1) 미래인재 특별전형

- 가) 선발 기준: 다음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고교 졸업 후 특정 분야로의 취업에 대한 의지나 계획이 명확한 자
 - 특정 산업분야에서의 인재로 성장할 가능성이나 소질 및 적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는 자
 - 학교가 교육과정 및 인력양성 분야와 부합하다고 지정한 자격을 소지한 자

나) 모집 인원

모집 단위	모집 정원	비 고
학과	전체 학교입학정원의 30% 이상	모집정원의 범위 내에서 학교별로 정함

다) 전형 기준

구분	평가항목			계
	정량적 요소	정성적 요소		
평가요소	출결	봉사활동	심층면접(실기평가 등 포함)	-
반영비율(%)	20	20	60	100
전형단계	1차	1차	2차	

※ 평가요소별 반영비율은 학교에 따라 10% 내에서 조정 가능

※ 학교에 따라 1차, 2차 전형단계 구분 없이 1차에 모든 평가를 진행할 수 있음

2) 학교장 특별전형: 학교별 전형요강에 따름



붙임 9

자율형 사립고 자기주도학습전형 매뉴얼

중등교육과

1 전형 개요

가.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 결과와 인성을 중심으로 고등학교 입학전형위원회에서 창의적이고 잠재력 있는 학생을 선발하는 자기주도학습전형을 실시함

나. 자기소개서, 학교생활기록부를 전형요소로 하여 학생의 자기주도학습능력 및 핵심인성요소를 평가함

- 자기소개서 작성 시 각종 인증시험 점수, 교과목의 점수나 석차, 교내·외 각종 대회 입상실적, 자격증, 영재교육원 교육 및 수료 여부 등 기재 시 0점 처리, 부모 및 친인척의 사회·경제적 지위 암시 내용, 지원자 본인의 인적 사항을 암시하는 내용 등 기재 시 항목 배점의 10% 이상 감점 처리
- “유사도 검증 시스템”을 활용하여 자기소개서의 표절여부 검증 의무화

다. 입학전형위원회에서 서류와 면접을 활용하여 학생을 선발함

- 면접전형위원 면접조 구성: 학교 위촉 면접전형위원 2인(교내 교사 또는 외부위원 위촉), 교육청 위촉 면접전형위원 1인
- ※ 입학전형위원회 구성

(입학전형위원) 입학전형요강 심의, 계획 수립·공고 등 입학전형업무를 총괄하는 입학전형위원회의 위원
(면접전형위원) 보수(신규) 연수를 이수한 면접 평가를 담당하는 위원 (단, 면접전형위원은 다른 전형위원을 겸임할 수 없음)
(전형관리위원) 입학전형의 실무를 담당하는 위원

라. 사교육을 유발하는 입학전형 요소 배제

- 중학교 교육과정 수준을 벗어난 입학전형 금지
- 학교별 필기고사 금지 및 교과지식 측정을 목적으로 한 전형 금지
- ※ 교과지식을 묻는 형태의 구술면접·적성검사, 외국어 면접·토론, 외국어 동영상 활용, 중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제2외국어 활용 능력에 대한 질문 등

마. 전체 모집정원의 20%를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법정차상위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한 사회통합전형으로 선발함

사회통합전형 지원자 수가 해당 전형 모집 정원에 미달인 경우, 학교의 장은 해당 전형 모집 정원에서 그 지원자 수를 뺀 인원의 50퍼센트의 범위에서 일반전형으로 선발할 수 있음

※ 관련 법령: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자율형 사립고등학교)제4항



2 지원 방법

가. 모집단위는 서울특별시로 하되, 자율형 사립고가 없는 시도 중 서울특별시교육감과 협의한 지역(경남, 제주, 세종)의 소속 중학교 졸업자(학력 인정자 포함) 및 졸업예정자는 지원이 가능함

나.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학교별 전형요강에 따라 지원함(해당 고등학교 홈페이지 참조)

다.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학교생활기록부, 기타 제출서류를 해당 고등학교에 직접 개별 제출함

3 선발(전형) 방법

가. <1단계> 내신성적 관계없이 정원의 1.5배수 추첨 선발

- 1단계에서 지원율이 100% 이하인 경우 2단계 면접 절차 생략
- 1단계에서 지원율이 100~150%인 경우 면접 실시 여부를 학교가 결정
(추첨으로 최종합격자 선발 가능)
- 1단계에서 지원율이 150% 이상인 경우는 추첨을 실시하여 정원의 1.5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 면접을 실시하여 최종 합격자 선발

나. <2단계> 면접으로 최종 합격자 선발

- 면접 내용
 - 자기주도학습 영역(꿈과 끼 영역)
 - 자기주도학습과정: 학습을 위해 주도적으로 수행한 목표설정·계획·학습을 통한 결과 및 평가까지의 전 과정(교육과정에서 진로체험 및 동아리 활동,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한 활동 및 경험 등 포함)
 - 지원동기 및 진로계획: 건학이념과 연계해 지원학교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한 활동 계획과 진로 계획
 - 인성 영역
 - 핵심인성요소에 대한 중학교 활동 실적: 봉사·체험활동을 포함한 배려, 나눔, 협력, 타인존중, 규칙준수 등에 대한 중학교 활동 실적
 - 인성영역 활동을 통해 느낀 점: 봉사·체험활동을 포함한 배려, 나눔, 협력, 타인 존중, 규칙준수 등의 활동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
- ※ 면접 시 교과학습발달상황을 포함한 교과 관련 영역에 대한 평가를 금지함
- ※ 서울 이외 방식 자사고(하나고)는 별도 선발 방식에 의함
 - 1) 1단계: 내신성적 + 출결점수(감점)로 1.5 ~ 2배수 선발
 - 2) 2단계: 1단계 성적 + 서류·면접점수



4

제출 서류

가. 자기소개서

○ 자기소개서 주요 항목

- 자기주도학습 영역(꿈과 끼 영역): 자기주도학습 과정, 지원동기 및 진로계획
- 인성영역: 핵심인성요소에 대한 중학교 활동 실적 및 이를 통해 배우고 느낀 점 등

핵심인성요소란?

- 핵심인성요소는 봉사·체험활동을 포함한 배려, 나눔, 협력, 타인 존중, 규칙준수 등 학생의 인성을 나타낼 수 있는 다양한 요소를 의미

○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

- 자기주도학습 영역(꿈과 끼 영역)과 인성 영역의 내용을 포함하여 1,200자(띄어쓰기 제외, 하나고등학교는 1,500자) 이내로 본인이 직접 작성
 - ※ 학교 등 특정장소에 지원자를 소집하여 자기소개서 작성 금지
 - ※ 대리 작성, 허위작성 혹은 표절 시에는 사후에도 입학 취소 등 불이익 부과
- 본문에 영어 등 각종 인증시험 점수, 교과목의 점수석차, 교내·외 각종 대회 입상실적, 자격증, 영재교육원 교육 및 수료 여부 등 기재 시 0점 처리, 부모 및 친인척의 사회·경제적 지위 암시 내용, 지원자 본인의 인적 사항을 암시하는 내용 등 기재 시 학교별 기준을 마련하여 항목 배점의 10% 이상 감점 처리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에서 사교육 유발요인이 큰 사항으로 규정한 내용은 자기소개서에 작성을 금하며, 면접 전형 등에도 관련 내용을 질문할 수 없음

자기소개서 작성 시 배제 사항

1. 각종 공인어학시험 참여 사실과 그 성적 및 수상 실적

【기재불가 공인어학 시험】

영어(TOEIC, TOEFL, TEPS), 중국어(HSK), 일본어(JPT, JLPT), 프랑스어(DELF, DALF), 독일어(ZD, TESTDAF, DSH, DSD), 러시아어(TORFL), 스페인어(DELE), 상공회의소한자시험, 한자능력검정, 실용한자, 한자급수 자격검정, YBM 상무한검, 한자급수인증시험, 한자자격검정 등

2. 교과·비교과 관련 교외대회 참여 사실과 그 성적 및 수상 실적
3. 교외 기관·단체(장)등에게 수상한 교외상(표창장, 감사장, 공로상 등도 기재 불가함)
4. 교내·외 인증시험 참여 사실이나 그 성적
5. 논문을 학회지 등에 투고 또는 등재하거나 학회 등에서 발표한 사실
6. 도서출간 사실



7.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출원 또는 등록 사실

8. 어학연수, 봉사활동 등 해외 활동실적 및 관련 내용*

* 다만, 특례입학대상자 또는 중학교 해당 기간의 2년 이상을 해외에서 거주한 검정고시생·외국인의 경우 해외 교육기관의 교육경험 포함 가능(대회참여·수상실적은 제외)

9. 부모(친인척 포함)의 사회·경제적 지위 암시 내용

예) 부모 및 친인척의 구체적인 직장명이나 직위, 소득수준, 고비용 취미 활동(골프, 승마 등), 학교에서 주관하지 않은 모듬 및 프로젝트 활동(사설 학원 및 기관에서 추진하는 교과 관련 활동) 등

10. 장학생·장학금 관련 내용

11. 구체적인 특정 대학명, 기관명(기구, 단체, 조직 등 포함), 상호명, 강사명 등

1) 기관명

- 교육관련기관(교육부 및 소속기관*, 시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에 한함)의 경우 기관명을 입력할 수 있음

* 교육부 소속기관: 대한민국학술원, 국사편찬위원회, 국립국제교육원, 국립특수교육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총 6개 기관)

** 시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의 [참고자료] 참조

※ 교육관련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기구, 단체, 조직 등 포함

- 봉사활동 실적의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에는 구체적인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을 입력함

2) 강사명

- 특정 강사명은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 모두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참여한 강의(또는 교육활동)의 강사를 말함

12. 교내대회 참여사실과 그 성적 및 수상실적

13. 자격증 명칭 및 취득 사실

14. 교과목의 점수나 석차

15. 영재교육원 교육 및 수료 여부

16. 지원자 본인을 알 수 있는 이름, 출신중학교 등 인적사항을 암시하는 내용

* 잘못된 자기소개서의 작성 사례

-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TOEIC 시험에 응시해 450점을 받았습니다. 이후 영어공부에 매진한 결과 850점을 얻으며 "노력은 결과를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 영어 성적이 100점이 되어 전교 1등이 되었습니다.
- 중2 겨울방학 중 ○○○에서 주최하는 ○○○○ 경시대회에 참가해 2위 입상이라는 쾌거를 올렸습니다.
- 어렸을 적부터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영어인증시험에서 최고 수준에 도달하였고, 전국 단위의 대회에 출전하여 매우 우수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 ○○지검 검사장이신 아버지를 따라 어렸을 때부터 법조인의 꿈을 키웠습니다.
- ○○방송반에서 동아리 활동을 했습니다.(출신 중학교명을 암시하는 경우)



나. 학교생활기록부

○ (서울 방식 자사고)

- 수상경력, 교과학습발달상황은 출력 시 제외
- 중학교 3학년의 행동특성 및 종합 의견은 출력 시 제외

○ (하나고(서울 이외 방식 자사고))

- 수상경력은 출력 시 제외, 교과학습발달상황은 원점수, 과목평균(표준편차)을 제외하고 성취도(수강자수)만 출력(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중 영재기록사항 제외)
- 중학교 3학년의 교과학습발달사항의 세부능력 및 특기 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출력 시 제외
- ※ 원서접수 이전에 학교생활기록부 제출을 요구하는 행위는 금지함
- ※ NEIS 출력물 공통양식(학교명/일시/IP주소/출력자명) 정보 비공개
- ※ 2026학년도 자기주도학습전형 및 고등학교 입학전형영향평가 매뉴얼(한국교육개발원) 등에 따라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붙임 10

예술·체육중점학급 운영학교 자기주도학습전형 매뉴얼

중등교육과

1 전형 개요

가. 학생의 자기주도학습 결과와 인성을 중심으로 고등학교 입학전형위원회에서 창의적이고 잠재력 있는 학생을 선발하는 자기주도학습전형을 실시함

나. 자기소개서, 학교생활기록부를 전형요소로 하여 학생의 자기주도학습능력 및 핵심인성요소를 평가함

- 자기소개서 작성 시 각종 인증시험 점수, 교과목의 점수나 석차, 교내·외 각종 대회 입상실적, 자격증, 영재교육원 교육 및 수료 여부 등 기재 시 0점 처리, 부모 및 친인척의 사회·경제적 지위 암시 내용, 지원자 본인의 인적 사항을 암시하는 내용 등 기재 시 항목 배점의 10% 이상 감점 처리
- "유사도 검증 시스템"을 활용하여 자기소개서의 표절여부 검증 의무화

다. 입학전형위원회에서 서류와 면접을 활용하여 학생을 선발함

- 면접전형위원 면접조 구성: 학교 위촉 면접전형위원 2인 이상(교내 교사 또는 외부위원 1인 이상), 교육청 위촉 면접전형위원 1인

※ 입학전형위원회 구성

- (입학전형위원) 입학전형요강 심의, 계획 수립·공고 등 입학전형업무를 총괄하는 입학전형위원회의 위원
- (면접전형위원) 보수(신규) 연수를 이수한 면접 평가를 담당하는 위원
(단, 면접전형위원은 다른 전형위원을 겸임할 수 없음)
- (전형관리위원) 입학전형의 실무를 담당하는 위원

라. 사교육을 유발하는 입학전형 요소 배제

- 중학교 교육과정 수준을 벗어난 입학전형 금지
- 학교별 필기고사 금지 및 교과지식 측정을 목적으로 한 전형 금지
- ※ 교과지식을 묻는 형태의 구술면접·적성검사, 외국어 면접·토론, 외국어 동영상 활용, 중학교 교육과정 벗어난 제2외국어 활용능력에 대한 질문 등

마. 전체 모집 정원의 10%를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법정차상위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한 사회통합전형으로 선발함

사회통합전형 지원자 수가 해당 전형 모집 정원에 미달인 경우, 학교의 장은 해당 전형 모집 정원에서 그 지원자 수를 뺀 인원의 50퍼센트의 범위에서 일반전형으로 선발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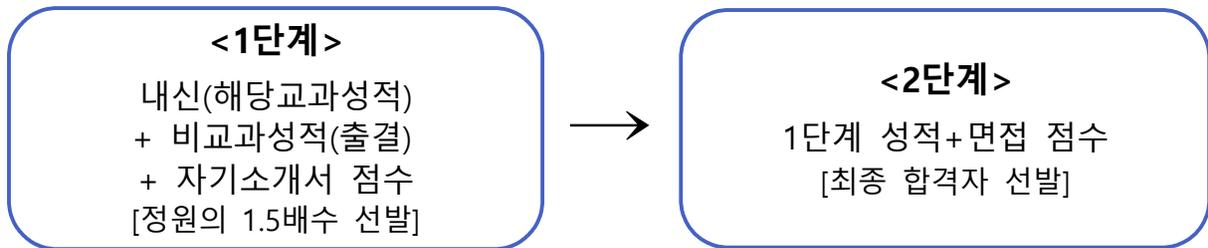
2

지원 방법

- 가. 중점학급 운영학교 중 1개교만 지원 가능, 합격자는 교육감 선발 후기고등학교 신입생(일반학급)으로 배정 받을 수 없음
- 나. 예술·체육 중점학교에 지원하려는 자는 학교별 지원서와 별도로 후기고등학교 원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다. 예술·체육 중점학교 내에서 교육과정 변경(중점학급⇒일반학급) 불가
 - 변경 희망 시 교육과정 이수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전입학 절차를 거쳐야 함

3

선발(전형) 방법



중점과정 관련 교과: 음악(대원여고, 영신여고), 미술(송곡여고), 체육(송곡고)

- 가. 《1단계》 내신(해당교과성적) + 비교과성적(출결) + 자기소개서 점수로 선발
 - 내신 반영 과목과 학년, 내신과 면접의 반영 비율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학교 자율로 결정하되, 내신은 원점수, 과목평균(표준편차)을 제외한 성취도 수준을 활용
- 나. 《2단계》 1단계 성적 + 면접 점수로 선발
 - ※ 세부적인 전형 방식은 2026학년도 신입생 입학전형 요강 참조

다. 면접 내용

- 자기주도학습 영역(꿈과 끼 영역)
 - 자기주도학습과정: 학습을 위해 주도적으로 수행한 목표설정·계획·학습을 통한 결과 및 평가까지의 전 과정(교육과정에서 진로체험 및 동아리 활동,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한 활동 및 경험 등 포함)
 - 지원동기 및 진로계획: 학교특성과 연계해 지원학교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한 활동 계획과 진로 계획
- 인성 영역
 - 핵심인성요소에 대한 중학교 활동 실적: 자기소개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핵심인성 요소에 대한 중학교 활동 실적
 - 인성영역 활동을 통해 느낀 점: 중학교 활동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



4 제출 서류

가. 자기소개서 주요 항목

- 자기주도학습 영역(꿈과 끼 영역): 자기주도학습 과정, 지원동기 및 진로계획
- 인성 영역: 봉사·체험활동을 포함한 배려, 나눔, 협력, 타인 존중, 규칙준수 등에 대한 중학교 활동 실적 및 이를 통해 배우고 느낀 점 등

핵심인성요소란?

- 핵심인성요소는 봉사·체험활동을 포함한 배려, 나눔, 협력, 타인 존중, 규칙준수 등 학생의 인성을 나타낼 수 있는 다양한 요소를 의미

나.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

- 자기주도학습 영역(꿈과 끼 영역)과 인성 영역의 내용을 포함하여 1,500자(띄어쓰기 제외) 이내로 작성
- 학생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다른 서류와 함께 지원하는 학교에 제출
 - ※ 학교 등 특정장소에 지원자를 소집하여 자기소개서 작성 금지
 - ※ 대리 작성, 허위작성 혹은 표절 시에는 사후에도 입학 취소 등 불이익 부과
- 본문에 영어 등 각종 인증시험 점수, 교과목의 점수석차, 교내외 각종 대회 입상실적, 자격증, 영재교육원 교육 및 수료 여부 등 기재 시 0점 처리, 부모 및 친인척의 사회경제적 지위 암시 내용, 지원자 본인의 인적 사항을 암시하는 내용 등 기재 시 학교별 기준을 마련하여 항목 배점의 10% 이상 감점 처리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에서 사교육 유발요인이 큰 사항으로 규정한 내용은 자기소개서에 작성을 금하며, 면접 전형 등에도 관련 내용을 질문할 수 없음

자기소개서 작성 시 배제 사항

1. 각종 공인어학시험 참여 사실과 그 성적 및 수상 실적

【기재불가 공인어학 시험】

영어(TOEIC, TOEFL, TEPS), 중국어(HSK), 일본어(JPT, JLPT), 프랑스어(DELF, DALF), 독일어(ZD, TESTDAF, DSH, DSD), 러시아어(TORFL), 스페인어(DELE), 상공회의소한자시험, 한자능력검정, 실용한자, 한자급수 자격검정, YBM 상무한검, 한자급수인증시험, 한자자격검정 등

2. 교과·비교과 관련 교외대회 참여 사실과 그 성적 및 수상 실적
3. 교외 기관·단체(장)등에게 수상한 교외상(표창장, 감사장, 공로상 등도 기재 불가함)
4. 교내·외 인증시험 참여 사실이나 그 성적
5. 논문을 학회지 등에 투고 또는 등재하거나 학회 등에서 발표한 사실



6. 도서출간 사실

7.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출원 또는 등록 사실

8. 어학연수, 봉사활동 등 해외 활동실적 및 관련 내용*

* 다만, 특례입학대상자 또는 중학교 해당 기간의 2년 이상을 해외에서 거주한 검정고시생·외국인의 경우 해외 교육기관의 교육경험 포함 가능(대회참여·수상실적은 제외)

9. 부모(친인척 포함)의 사회·경제적 지위 암시 내용

예) 부모 및 친인척의 구체적인 직장명이나 직위, 소득수준, 고비용 취미 활동(골프, 승마 등), 학교에서 주관하지 않은 모듬 및 프로젝트 활동(사설 학원 및 기관에서 추진하는 교과 관련 활동) 등

10. 장학생·장학금 관련 내용

11. 구체적인 특정 대학명, 기관명(기구, 단체, 조직 등 포함), 상호명, 강사명 등

1) 기관명

- 교육관련기관(교육부 및 소속기관*, 시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에 한함)의 경우 기관명을 입력할 수 있음

* 교육부 소속기관: 대한민국학술원, 국사편찬위원회, 국립국제교육원, 국립특수교육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총 6개 기관)

** 시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의 [참고자료] 참조

※ 교육관련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기구, 단체, 조직 등 포함

- 봉사활동 실적의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에는 구체적인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을 입력함

2) 강사명

- 특정 강사명은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 모두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참여한 강의(또는 교육활동)의 강사를 말함

12. 교내대회 참여사실과 그 성적 및 수상실적

13. 자격증 명칭 및 취득 사실

14. 교과목의 점수나 석차

15. 영재교육원 교육 및 수료 여부

16. 지원자 본인을 알 수 있는 이름, 출신중학교 등 인적사항을 암시하는 내용

*** 잘못된 자기소개서의 작성 사례**

-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TOEIC 시험에 응시해 450점을 받았습니다. 이후 영어공부에 매진한 결과 850점을 얻으며 "노력은 결과를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 영어 성적이 100점이 되어 전교 1등이 되었습니다.
- 중2 겨울방학 중 ○○○에서 주최하는 ○○○○ 경시대회에 참가해 2위 입상이라는 쾌거를 올렸습니다.
- 어렸을 적부터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영어인증시험에서 최고 수준에 도달하였고, 전국 단위의 대회에 출전하여 매우 우수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 ○○지검 검사장이신 아버지를 따라 어렸을 때부터 법조인의 꿈을 키웠습니다.
- ○○방송반에서 동아리 활동을 했습니다.(출신 중학교명을 암시하는 경우)

※ 2026학년도 자기주도학습전형 및 고등학교 입학전형영향평가 매뉴얼(한국교육개발원) 등에 따라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붙임 11

고등학교 신입학 특례대상자 자격요건 개선(안) 사전 예고

학교지원과

‘중·고등학교 특례입학 업무처리 요령(교육부 고시 제2022-37호)’의 폐지 및 존속기간 만료에 따라 새로 마련된 ‘중·고등학교 특례입학 업무처리 시·도 공동표준안’을 적용하여 ‘고등학교 신입학 특례대상자 자격요건 개선(안)’을 사전 안내하고자 함

1 관련 근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82조제3항
- 「중·고등학교 특례입학 업무처리 시·도 공동표준안」
(한국교육개발원 학교·교원정책연구실-848, 2024. 2. 13.)

2 개선 사항

특례입학 관련 용어 명확화

- 중학교 재취학과 편입학이 동일하게 처리됨을 명시하여 학생, 학부모, 업무담당자의 혼란 방지

편입학은 재취학을 포함

[참고]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제3항: 편입학(의무교육대상자와 아닌 자의 구분 없음)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의무교육대상자(재취학), 의무교육대상이 아닌 자(편입학)

특례대상자 자격기준(재취학 시점) 명시

- 중학교 1학년의 수업일수* 3분의 1 이전에 들어오게 되면 외국에서 중학교 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신입학 간주됨을 명시(특례입학 대상 제외)

단, 당해 학년 수업일수 3분의 2 이상 남은 시점까지 1학년으로 처음 재취학한 경우는 신입학으로 간주함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수업일수): 고등학교 매 학년 190일 이상



■ 적용예시

※ 수업일수 190일 적용 시

1. 2025. 6. 16.자 재취학(편입학): 수업일수의 3분의 2 미만 남은 시점, 편입학으로 간주
→ 특례 대상 해당
2. 2025. 3. 17.자 재취학(편입학):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남은 시점, 신입학으로 간주
→ 특례 대상 제외

□ 자격기준 개선(안)

구분	자 격 요 건	
제1호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9년 이상의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제2호	가목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하여 국내의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함)
	나목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국내의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다목	외국인 학생으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국내의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외국에서 2년 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함)
제3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의한 보호 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국내 중학교에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제4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3호 또는 제98조의3에 따라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을 받은 자	

* 편입학은 재취학을 포함. 단, 당해 학년 수업일수 3분의 2이상 남은 시점까지 1학년으로 처음 재취학한 경우는 신입학으로 간주함

※ 제2호 가목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외국학교 입학에 소요되는 기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재학기간 또는 거주기간이 2년에 미달된 때(2개월 이내)에는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특례입학자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선정

□ 기대효과

- 편입학 자격기준 및 개념의 명확화를 통한 특례 신입학 업무 관련 혼란 방지



3

유예기간 적용

- 2028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시까지 유예기간 3년 적용

* 유예 적용 대상: 2022~2024학년도 '수업일수 3분의 1 시점'까지 중학교 1학년으로 편입학(재취학)한 자

4

향후 추진 일정

-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사전 예고 실시: 2025 ~ 2027학년도
- 2028학년도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반영: 2027. 3월
- 2028학년도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특례 신입학 업무처리지침(안) 확정·배부: 2027. 8월



참고

특례 관련 법령 및 지침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1조(학급수·학생수) 학교의 학급수 및 학급당 학생수는 교육감이 정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학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 9. 29.>

1. 유급생
2. 제8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3. 재입학·전학 또는 편입학하는 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의 자녀
5. 기타 지역실정에 따라 교육감이 정하는 자

제82조(입학전형방법)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외의 방법으로 입학전형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 9. 29., 2008. 2. 22., 2010. 6. 29.>

1.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 9년 이상의 학교교육을 이수하거나,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국내의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 가. 외국의 학교에서 2년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이상 거주한 자에 한한다)
 - 나.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 다. 외국인 학생(부모 또는 부모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2년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을 말한다)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의한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이북지역의 학교에서 2년이상 재학하고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의 중학교에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4. 제97조제1항제3호 또는 제98조의3에 따라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을 받은 자



2.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504호, 2024. 12. 23., 일부개정]

[별표 7] 학적처리에 사용하는 용어

1. 입학: 학교에 들어감(1학년 신입학)
2. 취학: 처음으로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의 적정 학년에 들어감
3. 재학: 당해 학교의 학생 신분(학적)을 보유함
4. 재입학: 고등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자가 중단 이전의 학교에 재학 당시 학년 또는 그 아래의 학년으로 다시 입학함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 및 특수교육대상학생은 불가)
5. 재취학: 의무교육 대상자로서 "면제, 유예, 정원외학적관리"중인 자(의무교육을 중단한 자)가 다시 의무교육을 받고자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에 다니게 됨
6. 편입학: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자로서 학업을 중단한 자가 중단 이전의 학교에 재학 당시 학년의 차상급 학년으로 다시 입학하거나, 다른 학교로 다시 입학함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자가 학업중단 이전과 동일 또는 하위의 초·중학교 학년으로 다시 입학하는 경우에도 편입학으로 처리)
7. 전입학: 다른 학교 재학생이 우리 학교 재학생이 됨

3. 202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06. 인적·학적 사항 관련)

해설 2. 별표 7(학적처리에 사용하는 용어) (p.45)

가. 입학

- 1)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 남은 시점까지 1학년으로 처음 학교에 들어오는 경우를 말한다.

기재요령 4. 기타

사. 귀국학생 등의 학적 처리 방법 (p.54)

<예시> 학업을 중단(면제)하였다가 다시 들어온 경우

학적사항	2024년 02월 14일 □□초등학교 제6학년 졸업 2024년 03월 01일 ○○중학교 제1학년 입학(2024년 07월 18일 면제) 2025년 09월 04일 ○○중학교 제2학년 재취학
특기사항	2024.07.18. 정당한 해외 출국으로 인한 면제

※ 의무교육대상자가 의무교육을 중단하였다가 의무교육연령 내에 다시 의무교육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학년, 학교 및 학교급을 달리하여도 재취학으로 처리함(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 남은 시점까지 1학년으로 처음 들어오는 경우는 입학으로 처리함)

2026학년도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 교육감 선발 후기고

학교지원과 (☎ 399-9611~2, 9623, 9625)

| 영재학교 및 과학계열

창의미래교육과 (☎ 2282-8427, 8428)

| 외국어·국제·예술계열 및 자율형 사립고

중등교육과 (☎ 399-9715, 9528)



| 체육계열

체육건강예술교육과 (☎ 399-9575)

| 산업수요맞춤형고 및 특성화고

진로직업교육과 (☎ 399-9255)

| 특수교육대상자

특수교육과 (☎ 399-9624)